

제42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결산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3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3

(10시09분 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상임위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이소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교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3일간의 결산심사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입니다.

이소영 간사님 말씀처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차게 결산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회계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결산심사소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오늘 박형수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기재부차관님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또 체크할 건 체크하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하면서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종면 위원** 노종면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위원** 김성희입니다.

나라 살림 다루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좋은 의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배석할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출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원래부터 존경하는 박형수 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미 있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은 신치환 감사원 사무총장직무대행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감사원 제1사무차장 신치환입니다.

현재 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국회 감사요구사항 등 감사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경청해서 감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결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영 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소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예결위와 부처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0시14분)

○소위원장 박형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정대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소위 활동계획(안)이라는 이 책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활동 기간 및 장소입니다.

활동 기간은 9월 3일·4일·5일,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이 장소인 본청 638호입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과 재정관리관입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입니다.

소관 부처의 경우 장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차관급 부처의 경우 차장과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심사 방식 등입니다.

먼저 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대상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종합심사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관례입니다. 소위 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도 심사가 가능하나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원칙입니다.

가. 효율적인 심사 및 국회법 취지를 감안하여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은 원안대로 채택 하되 소위 위원 또는 정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임위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는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 결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입니다.

가. 경제부처에서 비경제부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나. 부처 중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심사하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는 뒤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개별 부처 내에서는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감사원 감사요구사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시정요구사항 중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사항,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 예결위 종합심사사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심사 방식입니다.

가. 시정요구사항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님들 간에 상호 질의를 한 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의 의견이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고·논의하고 정부 의견이 없는 사항은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호 2번입니다. 심사 중 위원 간 쟁점사항은 보류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대의견 심사 방식입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별도 협의체의 사전협의 실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요구사항 심사 방식입니다.

팔호 1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되 감사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호 2번입니다. 심사 중 위원 간 쟁점사항은 보류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위 의결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입니다.

5쪽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요구 유형에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이 있고 적용 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페이지는 최근 10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입니다.

7페이지는 61개 결산심사 대상 기관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은 향후에 이소영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이것도 책상 앞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16개 위원회 중에서 14개 위원회가 심사 완료하였고 심사 중인 데가 1개 위원회, 일정 미정인 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일정이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16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완료됐는데 그 결과입니다.

먼저 변상 1건, 징계 1건, 시정 110건, 주의 351건, 제도개선 1206건, 합계 총 1599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부처별 심사결과 현황인데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대한 심사는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 둘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끝으로 예결위에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자료 1권의 정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선중규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소위 자료 1권, 페이지 23쪽입니다.

1권 23쪽, 연번 2번입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 부처 배치 부적정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달라서 미처 따라가지를 못했는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23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확인했습니다.

23쪽,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시정으로 공감합니까, 제도개선으로 공감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는 제도개선 의견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여야 위원 다 동의하십니까?

○**이소영 위원** 김성희 위원님께서 시정 의견을 내셨는데 잠깐 이석하셔서 가지고요.

○**조정훈 위원** 이석하셨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이석하셨으면 할 수 없지.

○**이소영 위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대식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4쪽입니다.

24쪽, 연번 3번 소비자 권익증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제고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들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예결위에서 제시해 주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세 분이 시정을 요구했네요. 시정을 요구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겁니다.

○**김대식 위원** 제도개선을 우리가 요구했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가 아마 충분

하게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소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김대식 위원 상임위의 의견으로?

○이소영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사숙고……

○김대식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제도개선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상임위에서는 시정 의견 위원님 한 분이 제시를 하셔서 가지고요, 그때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었었고요. 예결위에서 더 많은 위원님 들께서 제도개선 요구하는 점 하나 있고요. 또 실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정 성립률을 좀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취지상 제도개선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작은 문제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한 분 위원이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좀 축소하시려는 듯한…… 상임위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의결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발언드리면 위원장님, 시작인데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수십 건, 수백 건 나올 텐데 상임위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의결한 내용을 저희 예결위위원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유형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다 각자 또 상임위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상임위의 내용이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오류가 있지 않다면 상임위의 시정요구 유형을 원론적, 원칙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원칙에도 맞고 또 효율적인 운영에도 맞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임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임위 의견에, 예결위 위원으로서 추후에 들어 보니까 도저히 이 의견으로 안 되겠다고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에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의견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오케이. 동의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 건은 시정으로 정리하시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상담원 수당 정산 지연 문제 반복 발생 방지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도 상임위가 주의로 했네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오케이.

○전문위원 정대영 그러면 공정위는 끝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정위, 동의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주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결위 관계자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바로 이석하는 걸로 합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만 하시고.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기한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48쪽입니다.

48쪽의 연번 2번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채권매입 목표 재검토 및 재원 조달 비중 등 재산정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시정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정부 측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을 말씀하셨고 허성무 위원님께서 시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허성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서면질의 변경서를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일단 해 주시겠다고 받아 왔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의 연번 5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사업구조 재설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부처 의견 있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지적이 다 맞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상임위 의견이 주의니까 주의로 가면 어떨까요?

○전문위원 정대영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만……

○노종면 위원 항목이 다 다른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이견이 없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시정요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정부 측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의견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결위에서만 지적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 하면 어떤 거를 제도개선 하실 생각이신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사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는 신용등급 10%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권에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불법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디어는 금액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조금 줬다가 성실 상환하면 금액을 좀 늘려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손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사를 관리하면 탈락하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정부의 돈도 아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좋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부처 의견을 수용하는 결로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주의, 제도개선, 제도개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소위 심사자료 1권에 따르면 다음 심사는 기재부 순서입니다. 따마는 위원장과 이소영 간사님과 합의에 따라서 기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시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차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최재봉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는 240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 대상의 소급적용 부적절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과 징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최재봉 이 부분은 시정요구를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 사업은 공평한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서 2020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왔고 이 부분은 상속·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상의 시가과세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시정요구사항과 같은 쟁점으로 다수의 소송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진행 중이고 이심까지는 모두 국가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건을 안건에서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시정요구를 제외해 달라는 게 징계, 시정을 다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취지의…… 설마 징계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겠지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두 가지 다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지요. 두 가지 다 삭제해 달라는 취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건가 보지요, 이런 사례들 여러 건이?

○국세청차장 최재봉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건이 소송 진행 중인데 이심까지는

모두 다 국가 승소를 했습니다. 삼심 대법원에 일부 건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면 위원** 242쪽에 보면 국세청은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에게 처가의 세무조사를 도와줄 수 있다며 협박을 시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실관계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뭐니까?

○**국세청차장 최재봉**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결위에서는 관련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한 건가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이 주장이 일이 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증거 등이 나와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안이 이미 일이 심에서 다루어졌고 국가 승소로 결정됐고 지금 현재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다거나 다른 법률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질문 하나만……

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하고 국세청이 분쟁이 있어 보이는데 제보자분이 과세 대상자인 건가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국세청 내부 직원이거나 하신 건 아니신 거지요?

○**국세청차장 최재봉** 내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내부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 건은 관련되는 사실관계가 다소 확인이 필요해 보이니까 보류하면 어떻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보류합시다.

○**조정훈 위원** 저도 보류를 위해서 한마디 남기면 저는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와 민간인이 소송 중인데 이것을 징계, 시정을 하면 우리가 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심까지 국가가 지금 승소한 상황에서 관계 부처를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당연히 시가가 원칙이지요. 상속·증여할 때 시가로 해서 돈 내는 게 맞지. 저는 이것 훈령을 내기 전에도, 신고 당시에도 시가과세가 원칙이고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김승원 위원님이 요구하셨지만 잘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거라고 짐작하고 저는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건 보류하도록 하고.

국세청 또 없나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더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국세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진희입니다.

○관세청심사국장 손성수 심사국장 손성수입니다.

○관세청운영지원과장 최연수 운영지원과장 최연수입니다.

○관세청운영지원과 임현웅 행정사무관 임현웅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세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256쪽입니다.

연번 5번 관세탈루심사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AEO 공인업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진희 저희 관세청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AEO 공인업체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중에 시행령 개정사항도 있고 해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제도개선.

○전문위원 정대영 상임위가 제도개선이다 보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아,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 나왔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더 논의할 것도 없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더 없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관세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안건 중에 상임위에는 없었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한 얘기는 지금은 심사 안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지. 먼저 하지. 아까 순서가 지금 상임위에서 온 것 먼저 하고 같이 중복된 것 그다음, 이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노종면 위원 아니요. 다 같이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여기서 그 순으로 한다는 건가?

○노종면 위원 아까 징계 건은 예결위에서만 나온 거잖아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만 제시한 안건들은 논의 안 해요?

○소위원장 박형수 하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다 포함돼 있어요.

○조정훈 위원 다 있고 논의 안 하면 다 수용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있는 그대로?

○전문위원 정대영 예.

○조정훈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부처 의견 있는 것만 체크해서 발췌를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차장직무대리 이형식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입니다.

차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차장이 공석입니다.

○조달청조달회계팀장 김수미 안녕하세요.

조달회계팀장 김수미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전문위원 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조달청은 두 쪽지입니다.

먼저 268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연번 2번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료 선납원칙 준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상임위는 시정, 예결위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차장직무대리 이형식 기획조정관 이형식입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직원이 실수로 관서운영경비 1건 잘못된 게 있어서요 바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시정을 희망합니다.

○이소영 위원 시정을 희망하세요?

○조달청차장직무대리 이형식 예, 시정이랑 제도개선 중에 시정을 희망합니다.

○임미애 위원 시정이니까 상임위 의견으로……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69쪽 마지막입니다.

연번 3번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집행 지연, 예산 조정 등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주의·시정·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있는데,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달청차장직무대리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입니다.

위원들께서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임위 의견과 동일하게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더 이상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조달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관계관계에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관계관계에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차장직무대리 이명호 통계청 차장직무대리 이명호입니다.

○통계청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진석 통계청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진석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통계청은 소위 자료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계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통계청 관계관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차관 강형석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올라오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박형수 시작할까요, 올라오면 시작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농림축산부 시작하기 전에.

○소위원장 박형수 예.

○김성희 위원 먼저 말씀 잠깐……

저희가 원래 순서에도 그렇고 제가 소개받은 대로 하면 기획재정위원회를 다뤄야 되는 데 그러려면 기재부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기재부1차관이 저희 소위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이걸 지금 뒤로 미루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부 부처가 1년에 겨우 3일 하는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 자기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1차관을 빨리 출석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석한 상태에서, 이게 또 세금과 관련된 얘기도 있기 때문에 1차관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혼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님 한 분 인사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박수진 기초실장 박수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농림부입니다.

소위 자료 2권의 31쪽, 연번 2번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의 실효성 제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제도개선이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어서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함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액’ 대신에 ‘지원금율’이라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수를 할 때 전액을 하지 않고요 의무기간에 비례해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은 면제하고 의무기간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만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금액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원금 받은 사람이 현저하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좀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두 번째의 제도개선은 수용하시되 문구 조정이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 대신에 지원금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 얼마를 환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모호해지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의무기간이 예를 들면 30개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시정요구가 없어도 영농 유지가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환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 대신에 지급액을 환수하자는 건 시정요구를 무력화하는 거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지금 전액을 지급액으로 환수하면 이미 있는 제도에서 변하는 게 없다면서요. 뭐가 달라집니까, 이 시정요구로 인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를 들어서 정착지원금을 20개월을 받았다면 20개월 미만을 하게 되면 반을 회수하고요……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영농 유지가 2년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 대신에 지급액이라고 바꾸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대로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시정요구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액으로 해 버리면 저희가 지금 받은 사람도 환수를 시켜야 되고 전액을 다 환수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은 받아들이되 지급액으로 바꿔 달라 그러면 지금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 하시려고 살짝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지금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사과하셔야 돼요. 왜 위원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속인 건 아니고요……

○조정훈 위원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시정요구를 지원금으로 바꾸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침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정요구도 필요 없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뭐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을 유지시켜 드리려면 지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있는 지침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조정훈 위원 ‘위원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유지시켜 드리려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정훈 위원 지금 우리 봐주려고 이거 시정요구 받는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삭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직책이 무엇이지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차관입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어떻게 이런 태도로 예결위에 오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시고요.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위원님께서 어렵게 지적하셨는데 삭제는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솔직히 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못 드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아까 말씀한 중에 이거 전체를 하게 되면 다시 환불해 줘야 된다는데 2년 이하의 정착이 안 된 이분들 위주로만 하면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2년 이내에 정착이 안 된 것은 원래 원칙이 회수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규정은 2년이 기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다가—3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20개월 만에 나가 버리면 이분들은 20개월 동안 받은 것의 반을 의무적으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년 이내, 24개월 이내에 하면 무조건 환수하게끔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반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반? 전액 환수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리고 정착지원금을 30개월을 받고 나서 30개월을 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개월 근무하지 않고 10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20개월에 대한 부분만 환수를 하게 됩니다, 20개월 못 채웠으니까. 그런 공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말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이걸 했던 제도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중간에 이탈이 많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을 규정해 봤는데, 지금 원래 규정은 2년 이내에 정착을 안 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고 돼 있는데 20개월 정도를 하면 반 정도를 회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착지원금을 규정상 최대 3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 최대로.

○노종면 위원 3년이네요, 3년?

○김대식 위원 3년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종면 위원 자꾸 겹돌아서 그런데요. 지금 있는 환수를 안 해도 되는 요건은 몇 년 이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기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종면 위원 기준이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3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최대 할 수 있는데……

○노종면 위원 최대 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얼마까지 해라 이것은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지원금 수령기간의 두 배까지 의무 종사를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2년이라는 말이 크게 의미 없는 이유가요 어떤 분은 36개월을 받고 어떤 분은 나는 10개월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10개월만 받은 분은 10개월만 더 추가로 근무하면 되고요. 36개월을 근무하신 분은 36개월 다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정하기보다는 그분이 얼마를 받는지 그게 기준이 됩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근무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

○김대식 위원 아이고,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정부와 위원님들 간에 좀 이견이 있

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심도 있게 검토해 봅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2쪽, 연번 3번 경영이양직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 및 성과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에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이게 제도개선으로 의결이 되었고 시정요구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농림부가…… 이것은 농어촌공사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률 진짜 너무 낮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새롭게 새 정부 들어서서 고령농들이 농지를 떠나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싶은데 사실 이것은 밭고랑, 논고랑이고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농촌 현장 때문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제도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의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것이 현장에서 4.1%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 부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업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 달라. 현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농민들은 내 농지 팔고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은 줬는데 집행을 4%밖에 못 하는 것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제 결산……

○임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이 상임위 의견대로 시정요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라는 요구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이미 그 당시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24년에는 3000ha가 목표였는데 1072ha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25년은 예산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농민들께서 단가가 현실화되기를 원하고요. 일시에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차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을 낮췄다, 그래서 집행을 높이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 사업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답변은 목표치 낮추어서 집행을 높이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현장에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니 현장의 농민들이 도대체 어느
 허들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없는지를 점검해서 예산을 낮추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님 그렇게 답
 변하시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현장 요구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류된 건과 관련해서 보류된 것을 다 모아서 따로
 심의하거나 간사 간에 협의하거나 이렇게 할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간사 간 협의를 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조치 요구된 대로 2년 이하
 인 경우에는 전액 환수토록 한다고 했을 때 청년농 정착 시도 자체가 차단될 우려 또 이
 렇게 지적하신 그런 취지는 도덕적해이나 의무감을 어느 정도 담보하자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잘 고려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 의견은 적극적으로 간사님한테 개진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건이 쌓이면 나중에 정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또 더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그러시면 연번 3번은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연번 4번입니다. 시설농가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가연동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현실화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
 요구 유형을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가 주의로 시정요구를 했
 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결과를 반영하여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4쪽입니다.

연번 7번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와 다른 사업변경 재발 방지 등 부분인데 이
 또한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시정요구를 했음을 참
 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상임위원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7번 사항에 대해서도 상임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8쪽, 연번 2번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018~2019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출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18~19년에 선정된 청년농이 귀농자금을 선택했을 때도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장의 어려움을 본다면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 2개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가 보면 한 186명 되는데 개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시정요구 유형은 받아들이는데 요구사항의 내용을 수정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귀농을 빼 달라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후계농·귀농이 아니고 귀농 빼서 귀농은 다른 정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처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39쪽, 연번 3번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정 같은 경우에는 추정하거나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경

우에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고 불용액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차관님, 제가 계속 악역을 해서 좀 유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 불편한 발언을 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리 더 엄하고 경중을 떠나서 지금 지적사항의 성격대로 시정요구 유형이 나와야 되는데 시정은 이미 있는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정입니다. 읽어 보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는 거고 제도는 법령 및 제도가 없을 때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있는데 이걸 안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데 안 따랐으면 시정이지 뭘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를 고치는 건데 그것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맞지요? 제가 과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격상 이것은 시정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말씀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시정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끝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을 하면 다음에 조치사항을 저희가 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김대식 위원 이미 시정했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시정이 다 돼 버려 가지고……

○전문위원 정대영 완료된 사업이고.

○김대식 위원 완료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예산 배정을 실수요에 맞게……

○조정훈 위원 그러면 주의로 하시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떠십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도……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것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주의로 하겠습니다.

농림부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차장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 서효원입니다.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이상호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51쪽입니다.

연번 3번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이전사업 지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농촌진흥청차장 서효원** 검토해 주신 주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김위상·유영하·조지연 위원님께서 주신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항목,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이 지연된 것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상 해태라기보다는 집단 민원으로 불가피하게 보상 절차가 늦어진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토지 협상, 토지 보상 협상 또 토지수용 재결 과정을 통해서 보상 업무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청 차원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추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정부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축산관계시설의 경우는 지역에 들어갈 때 지역 민원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애초에 계획한 바대로 일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노종면 위원** 그러면 지금 건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주의 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농촌진흥청차장 서효원** 아닙니다. 주의 사항은 수용하고……

○**전문위원 정대영**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문구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겠다. 이렇게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니……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 보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상이 아예 다른가요? 같은 건인가요?

○**농촌진흥청차장 서효원** 같은 건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청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주의가 1건으로 수렴되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차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위원님, 저희가 다시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건 자체는 2건이 아니라 1건으로 통합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임미애 위원 문구 수정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차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첫 번째 동그라미는 살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제외해 달라 그런 요구이지요?

○노종면 위원 그렇게 읽힙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말씀이지요?

○농촌진흥청차장 서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이야기지요?

○농촌진흥청차장 서효원 예.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농촌진흥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차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이미라입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이종수 기획조정관 이종수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산림청은 이견이 1건 있습니다.

77쪽, 연번 3번입니다.

목재산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보조금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청차장 이미라 저희 산림청에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2개의 의견이 있으신데요, 시

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완화해 주시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연내 집행뿐 아니라 교부금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유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자체 보조금 이거를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해 줘니까?

○**산림청차장 이미라** 지난번에는 저희가 한 번 했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관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산림청차장 이미라** 저희가 교부하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점검을 해서요, 지난번에는 지자체에서 추경을 집행하지 못해서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걸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산림청차장 이미라**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상임위 의견이 제도개선이니까 그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청도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산림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관계관계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원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김원배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07쪽, 연번 1번입니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이후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상임위는 주의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주의지.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정부 의견이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결위 임미애 위원님과 정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상임위에서는 주의로 의결했네요.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조정훈 위원 상임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행히 임미애 위원이 없네.

이거는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8쪽입니다.

연번 3번 해양오염사고 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 간 불일치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을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당초에는 예결위 임미애 위원님과 정진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를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이미 상임위에서 주의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9쪽입니다.

연번 4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는 쇄빙선이 몇 척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현재는 한 척이 있고요.

○김대식 위원 그게 몇 톤입니까, 톤수?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게 한 7000t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7000t.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 의견이 제도개선이기는 한데 뭘 제도개선하는 거지요? 이게 실집행률이 저조해서 정상 추진하라는 취지인데 어떤 것을 제도개선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어업

지도선 건조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법령·제도가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제도개선인데, 법령이나 제도를 고쳐야 이 실행률이 올라가고 2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사실은 저희들 어업지도선 발주 업무를 3개 소속기관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부로 이것을 몰아서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해서 이쪽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것은 전체가 317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4.5%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이것은 증액된 거고요. 그 앞전 사업비가 너무 금액이 적어서 조선소에서 입찰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찰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좀, 진행이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쇄빙선을 건조하는 그것 아니예요, 새로?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건조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3176억인데 금년도에 집행할 게 얼마고……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3176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쇄빙선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데 그 건조에 시간이 지금 더 걸려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까지는 건조 계약 체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집행이 저조했고요. 저희들이 금년 7월 말에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예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몇 톤짜리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것은 1만 5000t급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1만 5000t급.

○이소영 위원 이게 그냥 시정요구사항 문구만 보면 사실 시정이 적합해 보이는 문구인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하고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추진 주체 등을 개선할 것’ 이런 식으로 문구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사업관리를 할 전담팀을 만들고 해서 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는 걸로 체제를 정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조정훈 위원님, 아까 이런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더구면 이것은 왜 지적 안 하세요? 제도개선할 게 없고 시정이 아니라면 주의를 줘

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개선할 제도가 없으면, 정책 의지의 문제이거나 관리의 문제이거나 그러면 제도개선이 합당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뭘 개선하실 건지 그 대상이 제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관리 체계?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이소영 위원**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당을 해수부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면밀하게 다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바로 아래 있는 연번 5번입니다.

연번 5번 어업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중단 장기화 문제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상임위 제도개선이 있고 허성무 위원 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것도 위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이건 아예 소송 중이고.

이것 얼마짜리 예산입니까? 예산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24년에는 377억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누적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훈 위원** 예.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777억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소송 중이다, 그러면 소송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2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1심 결과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발주처인 저희 해수부가 승소를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 제도개선도 수용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 하시지요.

○이소영 위원 이것 상임위 의견대로 그러면 둘 다 제도개선으로……

○전문위원 정대영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연번 7번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것도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동안에는 관련된 주체 간에 이견도 좀 있었고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또 중간에 물가가 올라서 총사업비 변경 절차 등 행정절차도 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 이것도 최근에 저희들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하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게 마무리를 언제 해 가지고 언제 시작……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하여간 저희들은 연내에, 연말까지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매주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여튼 이것 조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하이픈을 보면 국회가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의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 주의 등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정 안 되고 있는데도 제도개선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이견 상임위가 제도개선 했고요, 예결위에서는 주의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차관님이 말씀한 건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소위원장 박형수 내가 보니까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데 더 강한 쪽을 해야 되지, 그것보다 더 약한 제도개선 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소영 위원 그리고 사실 내용이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네요.

○김대식 위원 이거는 제도개선이 아니야.

○전문위원 정대영 보시면 마지막 문장 중에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하시든지 주의를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종면 위원 그간 있었던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은 뭐였어요, 네 차례?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대부분 다 사업 집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시정요구 단계가 어떤 거였나요? 시정이었어요, 주의였어요, 제도개선이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기재를 ‘주의 등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로 기재돼 있으니까 최소한 주의를 준 적은 있네?

○이소영 위원 이걸 시정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대식 위원 예, 좋습니다. 시정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시정하라는 그거니까, 빨리 시정하라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걸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시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연번 11번 내수면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상임위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상임위와 허성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연번 17번입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상임위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의결을 해 주셨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임미애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말씀……

○김대식 위원 해양수산부 전체 사업이 굉장히, 꼭 어떤 특정한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려요.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느리고 이월시키고 또다시 하고…… 일단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사업이 되고 나서 공모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상반기가 지나가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여간……

○김대식 위원 전년도에 한 것이 이월률이 막 50%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해 났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이러면 국가 예산 짜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이 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금액을 좀 적게 놓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넣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잘못하면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집행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항은 사업자 선정이 8월에 완료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항도 아직 예정인 상태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 자료 발간 이후에 계약이 체결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0쪽입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상임위와 허성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아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내서 초반부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도.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편성하는 사업의 초반부에는 좀 적게 편성을 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공사비를 넣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연부율 개선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같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는 제도개선 동의하는데요. 이게 5년간 3조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반토막, 56% 이래요.

기재부차관님, 이것 예산 깎으세요. 지금 빚내서 예산 만들고 다 이자비용 지출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 세금 더 내게 만드는 나쁜 사업이에요. 집행률이 이렇게 계속 42, 52…… 80, 90이 안 되는 사업을 왜 계속 줘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반성되는 바가 많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깎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신 거라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근거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집행률이 떨어져서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계획수립 단계부터 검토했던 부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리 정부 차원의 평가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것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 연도, 2차 연도에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 아니, 그거는 늦어진 이유고요. 앞으로 예산을 깎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수부 입장이 있어야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안 그래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신정부 들어서 구체적인 세부 유형들을 좀 더 개편하고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하고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노종면 위원** 그래서 깎는 방향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체 숫자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차관님, 이것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깎는 쪽으로 방향이 딱 잡힌 거예요?

이게 2023년에 수립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수립된 것을 2023년부터 편성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

○**노종면 위원** 예, 아무 분이나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사업명은 좀 다르지만 최초에 이렇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하는 사업은 앞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노종면 위원** 그거는 언제부터도 있었던 거고요. 이 사업이 언제 왜 이렇게 큰 규모로 책정됐는지, 왜 지금은 깎겠다고 하는 건지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차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이렇게 구상이 됐을 때는 민간투자, 그러니까 어촌에 투자하는 것도 재정사업만 가지고 하지 말고 민간투자를 같이해야 훨씬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투자를 같이 유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민간투자를 100억 원 이상 유치해 와라, 그러면 거기 매칭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얼마만큼 해 주도록 이게 다소 경직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0억 이상 유치가 안 되는 어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억이라는 최저한도를 꼭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고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김대식 위원** 유연성을 줘야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거는 그 당시에 해수부하고……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것은 저희 해수부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설계는 저희 해수부에서 설계를 해서 국회 심의……

○**노종면 위원**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부분은 결산과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이고, 제도를 개선하고 할 때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 신활력 사업도 그렇고 농촌에도 보면

농촌 신활력 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들이 마련된 취지들이 다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거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고 26년 예산 할 때 이것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제도개선입니다.

해수부 마지막입니다.

124쪽, 연번 2번 마리나 항만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적정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김위상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

○김대식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여수·안산 마리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사업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공사비 전액을 이월·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게 왜 이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둘 다 행정절차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을 했고 또 지방비 확보 문제라든지 또 안산방아머리는 이 사업을 시화방조제와 바로 붙여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방조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한 추가 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했다면 모르지만 3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고 이거를 전부 다 이월하고 불용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집행해야 하는데 기재부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세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정부 사업을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없고 이러면 국민들이…… 이것은 상당히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저도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25년 예산은 10억 그리고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1억만 반영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들 저희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임기근 차관님이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내년 1억 반영하면 그것은 됩니까? 지역에서 이것 예산 사업 안

하겠다고 말은 못 하고 그냥 킬해 나가는 과정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닙니다. 킬하기보다는 내년 사업은 기존의 사업비가 이월된 게 있으니까……

○조정훈 위원 이월된 게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착수할 수는 있고요. 다만 예산집행 과정을 봐 가면서……

○조정훈 위원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사업은 계속 유지한다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시정을 하려면 회수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든지 이런 조치가 수반돼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현재로서는 그런 요소보다는요 저희들 사업관리를 잘해서 지방비 매칭시켜서 사업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시정의 취지와 맞지는 않는데? 주의로 하든지 징계로 하든지 해야 되지 시정은……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주의로 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해수부는 주의를……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위원님들이 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정이 되려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회수를 하든지 원상복구하든지 추정하든지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게요 위원장님, 여기 전문위원이 나눠 준 시정요구의 대표 사례 정리를 보면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의 내용에 적정 소요의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편성 규모를 줄이는 것도 시정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 해당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시정으로?

○조정훈 위원 예, 시정 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주신 말씀 반영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5년·26년은 그렇게 취지를 반영해서 예산을 대폭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시정하고 주의 중에서 시정 할 거냐, 주의 줄 거냐……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시정 하세요.

○이소영 위원 시정으로 하세요.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이 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그러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해수부는 마쳤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장님, 해수부 마치고 전예요 저희 간단히 의견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10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00페이지 가시면 31번 사업이 있습니다.

31번 사업에 보시면 ‘고수온 피해양식장 재해보험 제도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약간의 문구 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확대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고·저수온 특약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며’ 그리고 세 번째가 ‘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 방침이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특약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해수부도 비슷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계약으로 편입을 해 버리면 양식어가의 선택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항목 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중하고 관련해서 현재는 50%인데 그 나머지 수산업하고 관련된 보험료의 국비 지원율이 지금 전부 42%, 47%, 제일 높은 게 50%여서 이것만 50% 이상 하는 것은 부담되는 측면이 있고 또 결산 심사를 할 때 예산의 규모를 확정적으로 늘리는 의사결정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취지는 살리되 문구를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양식어민들의 고수온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당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담 없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등’ 안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킨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소영 위원 타당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고·저수온 특약을 주계약으로 포함시키자라는 요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마 일부 어업인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말씀……

○노종면 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가 안 쓰여져 있어서요.

○전문위원 정대영 상임위입니다.

○노종면 위원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뭐 예산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요. 주계약으로 포함시키면 정말 어업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건지 상임위에서 판단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없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시로 ‘등’이라고 돼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해수부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다시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들이 계시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에요. 여기 상임위 의결대로면 개선안에 주계약 포함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도 ‘등’으로 포괄될 수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지금……

○김성희 위원 보류하시고 한번 상임위 의견 확인해서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그러면 보류할까요?

○노종면 위원 저희가 판단하기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럼시다. 그러면 일단 이걸 보류하고 추후에 부처 의견도 듣고 기재부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종합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그냥 보류하는 과정에 입장을 내면 노종면 위원님 아까 입장 내신 것처럼 이걸 기재부차관의 제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수온 피해를 가입하면, 주계약으로 하면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위 다른 리스크, 위험군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은 이 고수온 피해가 아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가 됩니다. 이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보험 관리의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놓여준 정책이라기보다 보험 운영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재부의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저보다는 훨씬 지식이 많으셔서 그냥 질문 삼아 드리면 고·저수온 특약을 따로 해야 되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주계약에 아예 포함시켜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조정훈 위원 반대지요, 반대.

○노종면 위원 반대예요?

○조정훈 위원 지금은 고수온, 제 입장은 고수온 피해 특약까지 가입하면 그 어민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상당히 큰 비용이, 보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주계약으로 하면 보험 설계자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농민들의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차관님, 그걸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걸 보류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의논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소위원장 박형수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해양경찰청 차장직무대리 여성수라고 합니다.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38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항공기정비유지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인 예산 과다편성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시정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이걸 그냥 보험료 지급 사업인데 왜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저희들이 2001년부터 사실은 소방·해경·산림·경찰 4개 기관이 통합해서 보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의 보험사로부터 저희들이 견적가를 받아서 가장 낮은 견적가로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특정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도 낙찰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낙찰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보험료 지급 예산으로 58억 8500만 원 예산을 받으셨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절반, 28억을 타 사업으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일단 저희들은 공공요금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공공요금……

○김대식 위원 공공요금 그것 하더라도 그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상향한다는 그걸 예측 가능하게끔 짜고 이래야 되는데 보험료를 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 쓰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5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우선 따 놓고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건 이리로 이용해서 좀 쓰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 짜여졌다는 그런 방증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된 걸 인정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양경찰청이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야 불용도 없고 또 예산집행도 적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좀 전에 아까 차장님 답변하실 때 몇 년 동안 특정 보험사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몇 년 동안 계속 하면 그러면 예산액 자체를 낮춰서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그러니까 21년도에 4개 기관이 통합 보험을 시작했는데, 21년·22년·23년도에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졌는데 24년부터는 낙찰된 금액, 전년도 낙찰 금액으로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4개 기관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최저가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입찰로 입찰 방식 바꾸는 것도 저희들이 힘들게……

○소위원장 박형수 바꾼 건 알겠어요. 그런데 21년·22년·23년 3년 동안이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바꾼다는 게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한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얘기하는데 방금 차관님이신가요, 차장님이신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차장직무대리입니다.

○조정훈 위원 직무대리님, 방금 말씀하신 게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간보험사 견적과 낙찰가액이 너무 낮아서 예산이 남았다? 뭐 좋은 거지요, 돈 조금 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낙찰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보험료를, 돈을 더 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거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똑같은 상황에 대한, 위험 발생에 대한 보험료니까 매해 그렇게 크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현격한 위험요소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조정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차관님, 이것 보험료 남은 걸 공공요금에 쓰는 세목 조정이 합법이에요? 허용되는 겁니까? 이게 기재부와 상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기재부 승인을 받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조정훈 위원 이걸 꿀밤을 맞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런 것 매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시정요구사항만 보면 낙찰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세목 조정에 문제가 있다 그걸 또 청에서도 공감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시정요구사항 문구부터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

가?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주의가 필요한 그런 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낙찰 추이 분석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차이가 나지 않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이 사안의 본질을 보면.

어떤 의견이십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일단 어쨌거나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됐다라고 사실은 지적을 받았는데 결국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다하게 발생한 낙찰차액을 다른 데 썼다는 부분이 사실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추가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당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공공요금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전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의견을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목 조정, 그러니까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차관님이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기재부랑 협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안은 기재부랑 협의해서 전용이 이루어진 사안 같고요.

그리고 돈이 안 남도록 해야 되겠지만 돈이 남으면 다른 필요한 데 전용해 가지고 쓰는 게 또 재정 집행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도 있으니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해양경찰청은 실집행실적과 낙찰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하면 노종면 위원님 취지도 반영해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네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산자부는……

○김대식 위원 오후에 하시지요.

○이소영 위원 산자부 이견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전문위원 정대영 10건입니다.

○조정훈 위원 중기부는요?

○전문위원 정대영 중기부는 5건이고요.

○조정훈 위원 중기부 하나만 끝내고 끝낼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순서가 산자부 먼저 되어 있는데……

○노종면 위원 지금 산자부가 기다리고……

○이소영 위원 10건이면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한번 해 봅시다. 해서 한 20분 내에 끝낼 수 있으면 조금 더 하도록 하고.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문신학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차관 이호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정부위원들은 다 일어서서 인사하시던데, 이런 것 갖고 얘기하기 싫기는 한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관례대로 합시다, 그냥.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87쪽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바우처 사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하나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는 2건 다 주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4건 의견 주신 것에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8쪽입니다.

188쪽, 연번 11번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여예산의 임의활용 주의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1번 사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2번 사안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다만 징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시정이나 주의 쪽을 건의드리는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김대식 위원** 이게 1조 1410억 원이나 투입됐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 투입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1조 단위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중요한데, 왜 이렇게 당초 국회 의결하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돈이 이동이 됐어요? 왜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우선 불용 처리했던 게 예타 사업, 예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반영이 됐다가 예타가 확정되면서 나머지가 좀 불용됐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불용된 것과 관련해서 잔여예산으로 추가 과제가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추가 과제 부분 쪽이 프로그램 사업의 특성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세부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 밑에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불용보다는 잔여예산으로 추가적인, 중요한 이차전지하고 관련된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부 사업을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애초부터……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단위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아주 전문가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속 가능하게 되어야 되는데 항상 엇박자가 나는 이런 경향이 있어.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도 작년 말에 제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국회의 심의 없이 잔여예산으로 추가 과제를 수행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여기 요구되어 있는 시정요구사항, 징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상자가 해당 담당자라고 되어 있어요. 산자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을 뜻하는 것일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산 당국이라 함은 기재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만약에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관계자들을 더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산 당국과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편성을……

○**노종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책임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담당했던 그 산업부의 담당자가 특정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종면 위원** 산업부 담당자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사안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징계의 경우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노종면 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협의를 했는데 당사자도 책임 유무를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안을 그냥 한 사람의 책임으로 지금 단계에서 딱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명확하면 징계하는 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아니요, 만약에 시행이 징계 쪽으로 꼭 가야 된다고 할 때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산업부의 입장은 세부사업이 아니라 잔여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내역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 당국하고 구두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예산, 잔여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했다는 측면에서 징계까지보다는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내려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노종면 위원** 제 의견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보류라기보다는 이것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예산 부처하고 협의가 됐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여가부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심의 없이 잔여예산으로 추가과제를 수행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게 같은 내역사업 안에서 조정이 된 거라면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게 좀 필요하더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거라면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이런 경우에 관계 부처에서, 상임위에 양당 간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있잖아요. 적어도 한 번쯤은 보고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전에 소통을 하고 필요성에 공감한 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쓰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내역사업 간의 조정이 필요하더라는 판단이 서시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서로 협의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니다.

○**조정훈 위원** 노 위원님, 임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고요. 기재부도 있고, 제 생각에는 엄격하게 따지면 법과 제도 안에서 아마 이월했을 것으로 짐작해요, 기재부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징계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끼는 것도 저도 동의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의나 시정, 그 상임위

의결을 그냥 존중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대식 위원 예, 그렇게……

○소위원장 박형수 저는 위원장이지만 저도 위원으로서 의견을 하면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가과제를 수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추가과제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과제가 잔여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추가과제라면 가능한데 새로운 항목의 추가과제를 하면서 거기에 이 사업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함부로 시작했다라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저는 보류를 하고 부처 의견도 좀 더 듣고 또 위원님들 간의 의견도 더 듣고 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 이 3건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다음은 189쪽, 연번 12번입니다. 농어촌전기공급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의 계약 투명성 제고 및 불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 징계, 제도개선이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주의, 다른 예결위원님들은 제도개선이 있었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징계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두 유형 중의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합니다.

두 번째, 징계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이 23년 10월에 있었는데요. 감사 지적 이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한전 직 고용 관련된 그런 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전MCS로 위탁업무를 일원화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동 사안에서는 감사원이나 기재부, 유관 부처하고 다 설득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의 정도로 낮춰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주의에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주의 동의하고요. 다만 관계자분께 말씀드리지만 한국전력 저는 이 지적의 질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자단체 자회사와의 수의 계약 맺은 것 이것 한두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이것은 굉장히 질이 나쁘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다시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제도개선하는 방법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내년 26년 예산 할 때 제가 제도개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산자부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난 건가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가요, 사실관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사실관계 드러났고요. 물론 수의계약, 한전 퇴직자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는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입찰로 도입을 하려고 해도 도서지역에,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가히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경쟁입찰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다만 그것도 부족해서 자회사 형태로 해서 사업을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법률 위반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하니까 다시 좀 여쭙어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당시에 감사원에서는 이게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했었고 당시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하는 것은 규정상 적정했다라는 감사원 평가는 있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수년간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라고 되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당시 감사원의 내용을, 감사원에서 최초로 감사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한 문구로 보여집니다.

○노종면 위원 이후에 그러면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감사원이 바꾸었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감사원에서 그런 것들 다 소명을 해서 규정에는 기준에 적합하다. 아, 적합하다기보다는 규정과 맞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저도 주의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그러시면 위당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수년간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감사원 지적 이후인 2024년에도 한국전력공사의 부적정 행위가 반복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대식 위원 예.

○전문위원 정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

○전문위원 정대영 예.

○조정훈 위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아까 그것 할 회사가 없다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퇴직자 자회

사들이 그 시장 다 먹고 있어서 그래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막아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90쪽, 연번 13번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주의를 요구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상임위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상임위 의견 존중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부처 의견 안 듣고 그냥 따라요? 일단 부처 의견 들읍시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주의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용해요? 예.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91쪽입니다.

191쪽, 연번 14번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냉장고 문닫기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주의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93쪽입니다.

193쪽, 연번 1번 공공기관 총괄입니다.

총괄에 대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자본잠식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3개 공공기관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비핵심 자산 매각, 경비 절감, 고강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 실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해서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요? 의견 없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겠습니까? 보류하셔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시정요구를 냈는데요. 부처의 의견 존중합니다. 주의로……

○**노종면 위원** 이게 지금 지적돼 있는 공사나 공단 등이 다 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외에도 있는데 빠진 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 4개 기관이 전부 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왜 이런 곳에 이런 일이 특별히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공기업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해졌다는 부분,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부분,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시정요구 문구가…… 모든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다 잘 관리돼야 되지만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과거 정부의 자원개발 외교로까지 포장될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컸고 손실이 있었고 자본잠식되고 회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2024년에도 되풀이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자체에 자원개발 관련 공공기관이라고 특정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아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보류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럼시다. 그러면 보류를 하고 그 보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문구를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쳤던 것, 부채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사실 2024년에 새로 발생한 사업들은 아니고 과거에 투자했던 사업들이 영향을 이제까지 미쳐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어쨌든 자원개발 기관들의 특수한 문제가 특별하게 바로잡혀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의견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예, 이 항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95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R&D 관리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기술혁신전문펀드의 운용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제도개선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삭

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R&D 자금을 예산으로 가지고 와서 R&D 전담은행들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치한 것에서 나온 이자는 당연히 국고로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은행들이 저희들이 좀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부탁도 하면서 아무 의무도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술혁신펀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는 그 사례입니다. 산업부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완전히 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협조하는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 은행들이 차후에는 애초에 이러한 펀드 운용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자체를 좀 없애 버릴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보다는 삭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대식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동의해요? 지적인 위원님한테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동의해요?

○임미애 위원 혹시 위원장님 따로 의견 있으시면……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부는 삭제 요청이고 제도개선 의견을 말씀하신 위원이 있으니까 보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로 하고 정부 측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이것을 지적인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그러면 이번 사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연번 6번입니다. 주요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시정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보고서가 늦게 제출된 것은 맞습시다마는 이 건설을 하는 시행사, 남양건설이라는 시행사가 부도가 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정산 작업이 늦어지면서 보고서가 불가피하게 제출이 늦어졌던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이렇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얼마나 늦어졌나요, 제출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서비스투자지원팀장 임용기 서비스투자팀장 임용기입니다.

원래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5월 28일 자로 한 3개월 채 안 되게 늦어졌습니다.

○이소영 위원 부도가 나서 그랬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늦어졌는데 제도개선을 어떻게, 늦지 않는 방법으로 제도개선할 방법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런 부도 때문에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애초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걸 어떻게 담느냐는 거지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어떻게 담을 거냐고요, 부도가 났는데. 책임 주체가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제도적으로 보고서 제출이, 이렇게 법정관리 들어가서 정산 작업이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늦어질 때는 보고서 제출을 늦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예한다든지, 지금은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종면 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노종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98쪽, 연번 7번입니다. 주요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부실 작성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는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부처의 의견이, 이것도 또 비슷한 경우입니다. 남양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깐 이것은 부도 때문에 그러기는 했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시정을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입니다.

199쪽, 연번 8번입니다. 정부출자수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기관이 제출한 최신 자료에 기반하여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시정요구 주셨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립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이미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산정 방식을 개선해서 1월 달에 출자기관의 실적 자료를 조사해 갖고 저희가 전망해서 예상수입을 반영했습니다만 올해는 7월 달에 최신 자료를 활용해서 연간 전망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세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고려해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잠깐만. 차관, 하실 얘기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끝나고 나서 저희 하나 항목에 대해, 간단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저희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재부가 한마디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간단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요 47번 항목이 있습니다.

47번 항목에 보시면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비중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증가시킨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예탁 규모를 축소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탁 규모라는 게요 기금의 지출 과목으로 정식으로 계상이 되는 지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확정적으로 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는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 규모를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2시 반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왜?

○이소영 위원 일이 늦어져 가지고. 2시간은 하기로 했으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꼭 2시간 해야 돼요? 빨리해야 된다면서요.

○이소영 위원 2시 반으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형수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차장 목성호 특허청 차장 목성호입니다.

○특허청기획조정관 구영민 특허청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212쪽입니다.

연번 1번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비목에 대해서 가산금 적정 세입 과목에 편성 필요 등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있습니까?

○특허청차장 목성호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 과태료와 가산금을 세입 항목에 맞게 분리하도록 개선하고 과태료의 미납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연수 이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임미애 위원님, 이거 제도개선으로 했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임미애 위원은 시정 의견 내셨는데 상임위 의견은 제도개선입니다. 부처도 제도개선 의견.

○임미애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특허청차장 목성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과태료와 가산금에 대해서요 가산금 자체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태료와 가산금을 세입 항목에 있어서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향후에는 과태료와 가산금 자체를 세입 항목에 맞게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미납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무연수 이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처 의견 수용해서 저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15쪽입니다.

215쪽, 연번 1번 모태조합 출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모태조합 출자금 실투자 연계 강화 및 단계적 출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특허청차장 목성호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명과 시정요구 문구 등의 수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명에 있어서는요 현재 ‘모태조합 출자금 실투자 연계 강화 및 단계적 출자 필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모태조합 출자금의 신속한 실투자 집행 필요’라고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구에 있어서는요 ‘실투자 실적과 예산집행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계적 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신속한 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펀드의 투자 시점과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예측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출자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펀드의 투자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 출자금이 신속하게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대식 위원 이게 114억 원을 편성하셨지요?

○특허청차장 목성호 예.

○김대식 위원 거기에 민간 자금이 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이소영 위원 일대일 아닌가요?

○김대식 위원 일대일입니까? 114억이요?

○특허청차장 목성호 예, 일대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228억입니까?

○특허청차장 목성호 예, 228억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부처 의견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데요.

○임미애 위원 예, 부처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입니다.

216쪽입니다. 연번 2번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출연금 소요 예측 강화를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 필요라는 지적이 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특허청차장 목성호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라든지 대출 만기 연장 등

에 의해서 과거에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올해의 경우에는 출연금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6년 예산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출연금 소요 예측 강화를 위해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소요전망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왜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특허청차장 목성호 그동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만기 연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도래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실이 많이 발생되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기가 도달하면서 25년도에는 지금 현재 거의 출연금 대부분이 소진될 전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하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실 생각이세요?

○특허청차장 목성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이런 출자금들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그냥 추세치로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해서 출연금에서 앞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관한 전망을 각 은행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추계를 잡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김성희 위원 제도개선을 수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특허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김우중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앉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236쪽입니다.

236쪽, 연번 1번 중소기업부 R&D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은 R&D 예산 감액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방안 마련 및 R&D 예산 삭감 재발

방지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237페이지를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를 수용해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페이지 241쪽, 연번 6번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 부진 개선 및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김대식 위원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는 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후에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동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달된 검토의견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자체들과 더 협의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방안이 뭔지 물어보는 거여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사실은 예산편성 가능성이라든지 기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측에서 예산 반영 요구가 높은 경우에는 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기재부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특별한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그러면 6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연번 12번입니다.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50쪽, 연번 3번입니다.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글로벌 팁스 신청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시정요구는 수용합니다마는 일부 문안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투자액수 요건 완화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제도 운영에 따른 평균 투자 유치 규모라든지 경쟁률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기준보다 더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도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만 유사 지원 사업 수혜가 불가하고 과거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어떻게 수정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팁스 지원 대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을 인정하는 등 참여 대상 확대를 포함하여 신청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그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금은 투자 액수 요건이 들어 있고요 기존 선정 기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기존 선정 기업들은 당해만 안 되고 다음 연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부분에 대한 수정 문안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입니다.

252쪽입니다. 연번 5번 비은행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임의변경을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시정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평균 이자 환급 규모를 임의로 변경한 바 없고 다만 사업 신청 개시 당시에 금융위 산하 신용정보원을 활용해서 추정을 했던 규모와 실제 신청하신 규모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유형 완화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평균 환급금 75만 원을 왜 84만 원으로 올렸냐라는 건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한 바는 없고 다만 신청 대상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신청하신 규모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제도개선을 요청드린 이유는 저희가 당시 추정이 부족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할 때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40만 명, 25만 명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당시 저희가 금융위원회……

○김대식 위원 1만 명, 2만 명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15만 명이나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신용정보원에서 5~7% 금리로 비금융권 차주 현황 전체를 뽑아 보니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서 40만 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신청하신 분들은 25만 명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신용금융 그쪽에다 아웃소싱을 했든지 했을 건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다 그렇게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웃소싱 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랬습니다.

○김대식 위원 추정치가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추정치가 틀렸다고보다는 신청하신 분들이 당초보다는……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숫자가…… 40만 명이면 홍보가 부족했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15만 명이라는 것은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신청이 적었다고 여기에다가 돌리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다만 저희가 평균 환급금을 임의로 조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평균 환급금을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에요, 75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걸 조정할 수가 없는 게 3000억을 40만 명으로 나누기를 해서 75만 원이 나온 거고 저희가 더 높였다는 게 아니라 2112……

○임미애 위원 이거잖아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40만 명 기준으로 75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 25만 명이어서 집행하는 돈 75만 원을 상승시킨 거잖아요, 84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이차보전 해 드리는 금리를 최대 1.5%p로 사전에 계획을 했었고요.

○임미애 위원 그것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 하기가 마땅치가 않은데,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잘못이 없다면 삭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해야지 제도개선이 적합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중기부에서는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적하신 게 사업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변경한 바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제도 기획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대상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주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이 있으니까? 사실 애초에 예측 자체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예측을 제대로 했는데 거기만큼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못 했는지 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주의를 그냥 수용하는 게 맞겠는데, 제도개선 마땅치가 않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임기근 차관님, 쪽 보니까 기재부에서 물론 참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히 챙기고 이렇게 하지만 정부 전체의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국가 빚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도 매년 몇백억은 충분하게, 몇천억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한 96, 97% 되고요.

○김대식 위원 전체로 봐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리고 사업이 한 1만 7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잘 안 돼 있는 사업만 모아 놓고 보니 이게 모든 정부 사업의 집행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97% 이상 집행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이 1개 사업이라든가 덜 생기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왜 그러냐면 기재부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총집합돼 있기 때문에 물론 꼼꼼하게 챙겼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냥 눈에 보여,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소위원장 박형수 중기부 끝났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복지부1차관 이스란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3권 72쪽입니다.

72쪽, 연번 2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집행 제고 및 내실화,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상임위의 제도개선과 예결위원의 주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복지부1차관 이스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 내용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부처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5쪽, 연번 3번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침위반 재발방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 건 또한 앞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보조금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 교부 등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건 상임위 의견이 없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왜 이게 실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이게 사실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누계 연도로 보면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지는 않은데요. 올해만 보면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식 위원** 왜 올해만 그렇습니까? 수련시설 건립 실집행률 0%,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실집행률 2.4%, 복합힐링센터 건립 실집행률 0%. 차관님, 이게 왜 이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광주 복합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이

게 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25년까지 다 하면 6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올해만 이렇게 된 거고요. 공사 과정에서 좀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교부를 했으나 집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 상황 고려해서 교부 등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다년도……

○**김대식 위원** 이걸 뭐 사업만 잔뜩 해 놓고 이러면 희망고문만 될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들 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이걸 저희가 교부를 한 건데 해당 지자체에서 못 쓰고 올라…… 집행을 못 한 거거든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못 쓰고 올라왔는데, 통합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지금 통합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지. 안 되면 중간 점검을 해서라도 어떻게 됐느냐 상황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할교부를 하든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임미애 위원** 이걸 노종면 위원님이 의견이 있으신가요?

○**노종면 위원** 저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보조금 2회 나눠서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지급을 했는데 실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가 일부는 분할교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5개년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집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교부를 하는 바람에 실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된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이 아니라 주의를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지만 사실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짜다 보니 계획이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행 상황을 충분히 못 한 것도 있고,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말씀드린 대로 분할교부를 한다든지 집행 상황 고려해서……

○**소위원장 박형수** 분할교부는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분할교부 못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저희들이 올해는 이 상황들을 잘 보고, 집행 상황을 보고 교부 금액을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불용이 뻔할 걸 교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게 벌써 '22년도 결산심사 시 실집행 고려해서 교부금 교부하도록 기재부에 재발방지 방안 강구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음'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네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역으로 내려보내 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가뜩이나 국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요 다른 용도에 정말 급하게 쓰여져야 할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의 의견이 따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의 조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어때요? 부처 의견은 주의 수용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는 제도개선이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주의를 꼭 주셔야겠다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처가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면 보류를 해 봤다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다른 부처에도 지금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른 부처 할 때 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하시면 주의로 하고 죽어도 수용 못 하겠다 하면 보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죽어도 수용 못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으로 부처 의견은 없는데 기재부가 약간 보고드릴 게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아주 간단한 의견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페이지의 4번 항목을 보시면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돈이 너무 없어서 관리운영비를 예산에서 상당 부분 지원했는데 그 뒤로는 기금 규모가 확대되어 관리운영비를 조금 줄여 왔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 100억 원으로 정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확대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100억 원 정액 지원하는 걸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관리비를 100억 하느냐 110억 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법도 개정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냥 삭제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관련돼서 저는 반대고요.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수령자가 한 25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실상 전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비 전체를 댔던 전례도 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의 고갈 시기가 언제 온다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전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연금으로 들어온 돈은 연금으로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국가의 사무를 연금공단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면요 기금 고갈 시점인 72년인가까지 계산을 하면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100조가 넘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리, 그러니까 5.5%의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300조가 넘는 돈을 이 제도 하나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가 이걸 100억만 내겠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전액을 다 낼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하고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라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70년에 국가가 이걸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2070년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메꿔야 되고 그 돈을 거기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 세대는 이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 2070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비율이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기

지원하고 그 나머지 지원 안 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기금이라는 지출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그 항목에서 기금 사업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재원을 마련할 때 일반회계에서 일부가 온다 그런 의미인 거지 국민연금공단이 별도로 돈을 벌어서 운영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다른 데 쓸 돈도 급한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체적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살아갈 길을 만들어야지 미리부터 지금 당장에 쓸 돈도 부족한데 국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마련해서 국민연금으로 더 많이 쌓아 뒀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양쪽 얘기가 다 일리도 있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류를 해서 부처 얘기도 좀 더 들어 보고 위원님 얘기도 좀 더 들어 보고 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다음 항목은 25페이지에 있는 31번 사업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구조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보건복지부는 난임진단 여부에 따라 냉동난자 해동 이후의 절차를 이원화하는 현재의 사업구조를 조정하여 난임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오해가 약간 있는데요.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에 이 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2022년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복지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도 이게 지금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사업을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구조를 조정해서 난임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 정도의 위딩 수정은 괜찮은데요 지금처럼 국비와 지방비를 명확하게 쓰는 것은 사실 지방이양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대충 1년에 얼마나 나가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게 예산은 5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에는 냉동난자를 해동해서 수정하고 배아 배양하고 관찰하고 이식까지 하고 해 주는데 있는 경우에는 해동만 해 주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구조를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소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하나는 난임진단을 안 받았을 때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난임진단을 받았을 때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업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규모는 한 227억 정도 됩니다. 지방비까지 합치면 49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22년도에 지방으로 재원하고 사업을 같이 넘긴 겁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난임진단을 안 받은 사업을 국비하고 지방비 사업으로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 규모가 5억이에요. 그래서 500억짜리 사업은 지방으로 넘어갔고 새로 5억짜리 사업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정요구사항대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 지방으로 이미 이양된 490억짜리 사업을 국가보조금법 시행령 위반을 해서 다시 가져와서 국비, 지방비 반반씩 사업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할 때 스터디가 안 됐나,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저희는 지금 기재부2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495억을 다 매칭한다고 이해하지 않았고요. 이 사업 5억 5000만 원에 관해서, 지금은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지원 방식이 다르고…… 없는 경우에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구조를 좀 개편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방향에 저희가 동의한 거고 제도개선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난임지원 모두를 저희가 매칭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시다. 이 5억 5000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던 거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러면 그 구조를……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한말씀만 드리면……

○**소위원장 박형수** 차관님, 잠깐만.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 문구 중에서 ‘난임진단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말을 빼고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로 하면 양쪽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소영 위원**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매칭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도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둘 다 합니다. 난임진단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어떤 경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러니까 냉동난자를 해동하고 정자 채취하는 것도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해동하고 시술하고……

○**이소영 위원** 아니, 제 말은 난임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난임 진단서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해 가지고 지원 결정서, 제가 이 과정을 거쳐 봐서 알거든요, 지원 결정서를 받아서 병원에 제출해야지 나중에 채취하고 냉동하고 하는 비용을 보건소에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난임 치료자들은 다 이 난임 진단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 5억 원짜리, 난임 진단이 없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느냐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지금 난임 진단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서는요 난임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동하는 것만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없는 경우에는 해동도 해 주고 배아를 이식하는 시술도 해 주고 검사도 해 주고 다 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업이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 주냐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임 부부를 지원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난임 지원 사업인데 난임 진단이 없는 경우에 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임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냥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난임 부부라고 해 주기도 하거든요. ‘난임 부부다’ 이렇게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저희가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절차, 세 군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다 또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명백한 노산이다 이런 경우에 국한해서 이런 진단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3개를 다, 정자 검사, 나팔관 검사 다 받게 해 놓고 이 트랙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먼저 말씀하신 복잡한 절차로 지원된 사람들은 아까 2차관님이 말씀하신 490억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그 사업을 다 지원받으세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5억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5억은 그런 공식적인 진단이 없는 부부한테도 가고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조건이 없어도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잡한 그 절차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김대식 위원 아니,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임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가 그것도 다 검토는…… 저희가 이것을 난임 지원 사업으로 묶는 것도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그냥 받았던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까 2차관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495억을 다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셨다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있지요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해동 이후의 절차를 이원화하는’ 이 말이 뭐냐? 해동 이후의 절차를 이원화하는 게 난임 진단을 안 하는 경우, 난임 진단을 한 경우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난임 진단을 안 한 경우는 국비 지원을 하고 난임 진단을 한 경우는 국비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원화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원화하는 현재의 사업구조를 조정하여 난임 진단 여부 관계없이 국비와 지

방비를 매칭한다’는 이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국비를 주자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해석이 어려운 거지요, 이것은.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여기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류해 놓고 부처 의견도 듣고 기재부차관 의견도 듣고 위원들도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자꾸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보류로 해 놓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27페이지 보시면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원칙을 고려하여 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 이게 지금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아주 엄밀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업으로 수혜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면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면 그 숫자만큼 발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 규모가 수백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고 16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서비스를 받는 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되니 정확한 통계치를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신 분들이 이 사업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상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해 주십사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노후준비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컨설팅해 주고 이런 사업이지요, 이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노년을 앞선 분들께 재무나 건강, 여가 관리 이런 활동들을 컨설팅해 주고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정할 때 저희가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이슈가 나왔던 건데요, 2차관님 말씀대로 아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많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종면 위원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 의견이 제기가 안 됐어요? 유독 기재부차관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종면 위원 복지부도 지금 같은 의견으로 상임위가 끝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여쭙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 의견에 반대를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관님께서 ‘다 확인은 안 했지만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아니겠어요?’라는 말씀이신데 많기는 하겠지만 다는 아닙니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노종면 위원 결론은 이대로 해도 된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저는 상임위원님들이 이 요구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

에 제가 여기에서……

○**노종면 위원** 일반회계 전환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라는 법규가 있나요? 이게 법률 사항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이 노후준비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 지원법 제2조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국민연금법 제46조의3 조항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이게 국민연금을 쓰나 일반회계를 쓰나 16억에서 20억 그 예산 규모는 늘고 줄고 할 거는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계속 줄어 왔습니다.

○**조정훈 위원** 내년엔 10배로 갈 거는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16억 여기다 뽐나 저기다 뽐나 대세에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성희 위원** 그런데 저는 2차관님 말씀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23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73%지만 노인 수급률은 이때 50% 넘었다라고 광고한 거잖아요. 그것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노인분이요? 예, 기초연금 수급……

○**김성희 위원**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65세 이상 노인의 한 50% 정도가 지금 국민연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절반이 못 받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또 있기 때문이에요……

○**김성희 위원** 가입자도 73%고, 그러면 국민의 4분의 1이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가입자 한 2100만, 수급자 한 육칠백만 하면 한 3000만……

○**김성희 위원**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성희 위원** 4분의 1이 가입이 안 돼 있고 노인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데 이게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하면 일반회계로 해야지 어떻게 이걸 연금사업으로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이 사업은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 찾아오면 아무나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지역에 있는 지사예요. 여기 오는 양반이 국민연금에 가입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러, 이게 당장에

먹고살 일도 아닌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 국민연금에도 가입 안 한 사람이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김성희 위원** 아니,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한 게 아니라 연금 수급률이 50%인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지금 차관님 인식대로면 이 제도는 아예 일반 국민, 비가입자는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너무 방금 매몰차신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님.

○**노종면 위원** 일반 국민들이 상담하러 가실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그것도 상당한 부분 일반 국민이 포함돼 있다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금기금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게 연금기금이라는 게 다른 무슨 개인 쌈짓돈이 아니니까요.

○**이소영 위원**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아니, 저출산·고령화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령화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의무 지출이 늘어나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오늘 그런 장기 전망까지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노령이 되시는, 노인이 되시는 분들한테 재무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스스로 될가 노후를 대비하실 수 있게 컨설팅해 드리고 도움드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그 비용은 국가가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비용을요 국가가 내는 겁니다. 국가가 내는 건데 기금 지출사업에 잡히느냐 일반회계 지출사업에 잡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기금 지출사업에 잡혀 있으니……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내는 것은 기금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돈으로 내는 거고요. 일반회계로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의 국민들이 낸 돈으로 내는 건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의 주머니에서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오랫동안 있었던 이슈인데 국가가 기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측면도 있는 건데 국가가 국민연금한테는 연간 딱 100억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국민연금기금에 있는 돈은 꺼내 가지고 이런 컨설팅 자금도 내라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본부 이런 운영 회의비까지 지금 기금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구조 자체가 저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데요. 제도개선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표현을 좀 완화해서,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이렇게 좀 완화해서라도 이런 내용은 반영을 하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기금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돈들이 정말 기금이 지출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을 진전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들 얘기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지요. 끝말을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 이 정도 하면 양쪽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노종면 위원 그러면 전환하라는 게……

○소위원장 박형수 ‘하는 방안 등’ 이렇게……

○노종면 위원 그것은 포함되고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이 논점하고는 조금……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가? 그러면 그 표현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형수 방안을 검토할 것? 그게 더 센 표현 같은데.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갖고 오고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동안 계속 일반회계 전환을 요구해 왔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회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아 왔고 이번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도개선에 동의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으로 하기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단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노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은 예결위가 있는 게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 재정 당국,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기재부의 입장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결정을 하라는 건데……

실은 국민연금은 국가는 아니지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제도로 국가는 이것을 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절차를 제공하는 거지 국민연금에 국가 세금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수익금 등을 어떤 목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쓸 것인가는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자가 2050년 심각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든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연금 운용 그리고 재정 투입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쉽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검토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연금이 아니라 일반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요. 지금은 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포괄적, 일반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업이면 공단에서 하면 안 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고 국민연금법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아까 김성희 위원님 발언 신청했지요? 그것까지 듣고 정리를 합시다.

○**김성희 위원** 조정훈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는 반대로 국민연금법 총칙의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되면 이 법의 목적이 ‘이 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야 할 텐데 목적 자체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 전체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가입 못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그들을 그냥 늙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게 말이 국민연금이지 노후연금이잖아요. ‘국민들이 늙으면 국가가 보호해서 죽지 않도록 한다’ 이 정도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류해 놓고 다시 검토하는 방법과 지금 기재부2차관 얘기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양쪽이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동의하지 않으면 보류하고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이소영 위원**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검토하는 걸로.

○**소위원장 박형수** 검토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구를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또 다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95번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숫자는 ‘100분의 14’, 14%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데 100분의 14만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건강보험의 단기 수지가 지금 흑자고요, 누적 흑자가 30조 정도 돼서 보통 한 14%까지는 못하고 한 12% 정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 그리고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정요구사항처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 이렇게 되면 무조건 14%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삭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108조 그걸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14%라고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14%에 상당하는 금액.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블라블라블라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14%를 100% 지키라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게 현행법 제108조의2 조항의 취지이고요. 현재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법률에 명시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 이렇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차관님, 애초에 규정이 14% 상당액이라고 법률에 돼 있으면 그것을 준수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4%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14% 상당액을 지키라는 의미니까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을 아예 이렇게 바꿔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대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수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형수 예, 그렇게 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의반복이긴 하지만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는 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추후 오해의 소지를 막는 데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효과는. 지금 지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1.5~12.1%의 이러한 국고지원 금액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4% 상당액에 모자란다고 보고 지키라고 지금 주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쳇바퀴 도는 방식을 만들어 놔 버리면 이 문제는 또 불거진다. 이게 상당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12% 정도가 14% 상당액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지 지금 올해 한 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내년엔 12% 하면 또 상당액이 아니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 문제도 있네요. 14% 상당인데 지금 현재 11~12% 하니까 주의를 준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지만 이 조항의 첫 번째 문단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항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을……

○이소영 위원 하도록 노력할 것.

○소위원장 박형수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저는 그 안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진짜 이거는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차관님,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그냥 100의 14를 주라고, 적게 주지 말고 더 주라는 의미에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실질적 내용을 결론을 내고 문구 정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돌려 가지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걸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줄지 안 줄지를 지금 결정을 하자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부차관님한테 여쭙보고 싶은 게 이게 아까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 1항 문구 해석이 좀 난해한데 다시 제가 읽어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하는 건 보통 이런 지원 규정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일반적 문구인 것 같은데 그 뒷부분을 보면 상당히 클리어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정훈 위원 그 상당이 무슨 뜻이에요? 왜 상당이 들어 있을까……

○이소영 위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억 원, 10억 원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라면 그게 계산해서 그 금액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조정훈 위원 기재부차관님, 교육교부금 같은 것도 비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뭐 영점몇 %로 한다, 그때 다 상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당이라는 말이 없고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으로는 12.2%를 하는 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를 명확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논란입니다마는 실제로 얘기했을 때도 건강보험기금은 지금 단기 흑자가 나고 있거든요. 누적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을 규칙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노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조항 자체가 지금 법문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고요. 이 법문의 구성 내용과 상관없이 100분의 14를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무조건 계상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식적인 법 논리와도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2차관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개연성도 있지만 이 108조의2를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들어간 문구고요.

그리고 100분의 14에 상당한다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법으로서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고, 옛날에 많이 썼지만. 왜 14냐? 이것은 13.1~13.9까지 정도를 포괄, 상당한다고 하면 이해돼요. 왜냐하면 한 자리 숫자까지 특징을 했으니까, 4까지. 그러면 2차관님 말씀이 맞으려면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해도

이리저리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분의 14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특정했다라는 것을 해석하기에는 여기에 근접하게 주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해석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에 이렇게 지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법을 개정해서 이런 지원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든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지금 2차관님이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정요구사항을 지금 차관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은 뭔가 임시방편 같아서 동의가 선뜻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 정도가,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취지에도…… 법에는 14%라고, 상당액이든 어쨌든 간에 그 금액을 지금 퍼센티지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것 지키라는 의미지 그 14% 해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14%라는 규정을 왜 넣었겠어요? 그래서 거기 규정된 금액은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주의를 준 의미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주의를 왜 썼겠어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좌우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100% 동의하지만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은 법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논란이 아니고요 10년, 20년 넘게 지속돼 온 논란이고 고민 고민 끝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상당하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0분의 14가 실제적인 의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오히려 차관님의 그 해석이 맞는지,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더 성급한 결론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소위원장 박형수 이 부분은 정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정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보류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두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좋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저는 보류하는 것도 찬성인데……

○김대식 위원 보류하시지요. 보류해 가지고 조금 더 고민 한번 해 보시지요.

○조정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육위라 교육교부금이 상당히 큰데 이것도 다 위의 100분의 45,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당’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14의 이게 소수자리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14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법 위반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보다는 그 정도 수준을 교부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라는 그 비율보다는 국고지원 조항 또는 국고지원의 요구 내용을 준수할 것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비율이라고 해 버리면 법 해석을 초과하는 해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

○이소영 위원 저도 한말씀만 남겨 놓자면 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 14% 정도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로 징수하는 균형을 나름대로는 이 입법자가 의도한 거라고 보이고.

그런데 국가가 14%가 됐든 몇 %가 됐든 그만큼 지원하지 않아도 흑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규정을 만든 입법자가 의도한 것보다 보험료가 많이 징수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험료가 징수되고 있거나 아니면 줘야 될 돈, 응당 나가야 될 돈이 덜 나가고 있거나 하다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건혀서 또는 우리가 많이 걷고 있어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적혀 있는 국고지원을 덜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그런 취지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 다른 분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김성희 위원님하고 노종면 위원님, 보류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김성희 위원 예, 보류에 찬성입니다.

○노종면 위원 본조 신설된 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23년 6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견 내기 전에 그거는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이 조항의 신설이 법령정보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데 꽤 오래됐습니다.

○노종면 위원 14가 유지되어 왔어요, 그동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지금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항이 이렇게 규정된 상태에서 사실 복지부는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노력해서 상당한 그런 금액 비율을 준수하고자 노력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예산 심의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혹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준수하고자 노력해 왔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게 기재부, 재정 당국이나 복지부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의 그 취지를 반하지 않고 어쨌든 저희가 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은 된다고 봅니다. 저희 복지부의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의 의견도 참고를 해서, 보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때 부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로 일단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차장직무대리 기획조정관 우영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식약처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견이 없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식약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모두 수용하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식약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연구자들 있잖아요, 연구자들이 식약처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너무 까다롭게 해서 그런가? 식약처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허가가 안 나니까. 신약에 대한 허가권이 있었잖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식약처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입니다.

○**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 이상진** 기획조정관 이상진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118쪽입니다.

118쪽, 연번 1번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는 사업의 추진 필요 등이 있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 예결위원이 주의를 줬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도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다 전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이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의견을 제도개선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도개선으로 통일해서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매년 전액 불용되거나 이월이 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연구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복지부 사업으로 있다가 질병청이 독립하게 된 다음에 질병청의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었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했었고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업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의도적으로 과소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475억으로 산정해 놓고 예타를 회피하고 난 후에 갑자기 2052억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이것 너무 부적절한 방식 아닙니까,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있을 때 당초의 연구용역에서는 토지보상비가 좀 작게 책정되어 있었고요.

○김대식 위원 왜 이렇게 과소, 적게 돼 있었어요, 토지보상비가?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그 당시에 3개년 토지의 평균 가격을 대입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로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특정 단지에서의 토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됐을 때는 토지보상비가 많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센터 입지가 전라남도 장성인가요?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병원이지요?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병원 하고?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병원은 아니고 연구소만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 병원은 아니고?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장성으로 입지가 선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구소면?

○조정훈 위원 장성에 연구자들이 많습니까?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사실은 전남 장성으로 입지 선정이 우선적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보면 거기에 고령화가 좀 높아져 있었고 그 다음 노인 인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자체에서는 한 15년 전부터 이 부분의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피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16년, 17년도에 심뇌혈관 질환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분, 혹시 소개를 해 주시면?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의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부장 김원호입니다.

○조정훈 위원 김 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시면서도 참 장성으로 선정한 이유가 좀 웅색하시지요? 그 외 다른 여러 이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짐작합니다만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대한민국에 심뇌혈관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지금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까지 포함하면 1300만 명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10여 년 정도 우리가 필요해서 짓는 건데 총사업비, 사업기간 조정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5년 6년, 부처 바뀌었다고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도 얼마나 이게 고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성에,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심뇌혈관 연구자들이 장성 가서 살면서 연구할 것이라 하고 현실적으로 가정하는 것도…… 저는 이게 지역 무슨 발언이 아니에요. 심뇌혈관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의 연구자들이 과연 얼마를 주길래 전라남도 장성에 가서 연구를 하겠어요.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만큼 심뇌혈관 환자들, 살 사람 못 살리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만큼은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서……

심뇌혈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약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예.

○조정훈 위원 이것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라남도 장성에다 심뇌혈관센터 만들면 국내 최고, 세계 최고 센터 됩니까? 자신 있으세요?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애초에 병원 기능과 연구소 기능이 처음에 같이 설계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급성기 질환이기 때문에 전남 장성에 병원 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 측면에서 R&D 지원 측면에서 보면 전국 단위에서 어디에 연구소 단위로 있으면 내부 연구 일부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원 개념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기능을 같이 갖는다고 한다면 전남 장성이 연구소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다만 복지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임상연구시험지원센터 개념으로 집중이 돼 있어서 국립연구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 역할, 기

능과 그다음에 세부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체 세부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지연이 있었고 그 계획안을 기반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1094억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좀 발생했구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은 아예 정상 궤도에 올라와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성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전남대학교라든지 전라도, 호남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어렵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전남대학교에 그 부속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 있게, 쓰지 않고 방치돼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국립대학이니까 그런 곳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아예 전남대학교 부속 무슨 기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하게 되면 효율성도 좋고 실업에 효과도 많이 나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부처 이기주의가 돼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봐서.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지금 전남도하고 장성군하고 협의를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안부하고 조직이라든지 인력 등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출연연이든 아니면 산하기관이든 아니면 전남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남도, 전남대학교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속 공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로 할 것인지 제도개선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이나 또 상세하게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주의로 할 것인지 제도개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로 해 놔다가 부처 얘기도 충분히 들어 보고 위원님들 얘기도 충분히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사실 안전으로 올라와 있는 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지연됐다고 하는 점이잖아요. 불용되거나 이월된 규모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의 안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연된 부분, 그래서 진작부터 이런 연구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주요하게 나온 말씀이 오늘 안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이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설명할 때 처음에 연구소하고 병원을 같이 짓도록 했다가 병원은 빠지고 연구소만 하기로 하고 또 자체에서 뭘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그리고 총사업비도 그 과정에서 변경이 돼 갖고 새

로 또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걱정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연된 이유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요.

○**김성희 위원** 하여튼 말씀이 있었으니까 저도 회의록에 한 줄은 남겨야 되겠는데, 일단 전남 장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모든 기관들을 다 서울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라서 안 된다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전남 장성하고 전남대학교의 교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장성군청에서 전남대까지 20km도 안 됩니다, 택시 타고 20분이면 가는 거리라서.

○**김대식 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김성희 위원** 그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잘못 들으시면 마치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골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성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광주광역시에 딱 붙어 있는 데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된 건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 점은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무리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궁금한 건 기재부차관님, 26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예, 12억 15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그것 관련해서 일부 위원들은 주의 의견을 내셨고 일부 위원들은 제도개선 의견을 내셨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양쪽의 취지로 봐서 통일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주의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예, 이걸 주의 받아야지요.

○**이소영 위원**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저는 징계를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걸 안 되고, 제가 장성에 대한 나쁜 감정 전혀 없는데 실은 국립심혈관같이 의료 관련된 센터는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상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300만 뇌심질환 환자들 어디 사는지를 좀 알고 그 환자들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다 장성으로 불러서 임상실험을 할 겁니까? 이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위원님,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병원과 연구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시다만……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병원도 없이, 임상실험도 없이 센터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지금은 연구소 중심으로……

○**조정훈 위원** 그게 정말 의료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임상 실험센터가 주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있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국립보건연구원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위원님……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있고, 저는 이거는 주의 동의하고요. 26년 예산 심의할 때 이거는 정말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결산에서는 이걸 주의로 정리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희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거는 주의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예산 때 다시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질병관리청 다 됐나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질병관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환경부차관 금한승입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직무대리 손옥주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환경부는 한 꼭지입니다.

185쪽입니다.

185쪽, 연번 6번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보조금 집행잔액 수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 두 번째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환경부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징계 권한이 직접적으로 없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던 지자체가 지난 8월에 정산

이 완료돼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납부하는 걸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대안 문구를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환경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과 반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장기간 미반납에 대해 조속히 국고 수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으로 좀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반납 처리하실 예정이라는 겁니까,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원래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 위 때도 좀 지적이 됐던 조금 오랫동안 체납된 지자체가 광역 한 두 군데 있는데요. 그 게 8월 달에 정산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고지서까지 발부를 했고 올해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누적 금액이 1000억이 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2023년 게 좀 많은데 지금 이거 현재 정산 중이고요.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받은 돈이 1000억이 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2018년부터……

○**조정훈 위원** 뭐 한 거예요, 지금?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반납하는 절차가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지자체가 정산할 금액을 또 추정 등이나 이런 걸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그런 예산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추정 편성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좀 늦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제때 하는데 일부 두세 개 정도 지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누적된 데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멀쩡히 잘 하는 지자체는 바보예요? 뭐예요, 이게? 국가 돈이라고 이렇게 느슨하게, 주면 주는 거예요? 본인 돈이면 이렇게 안 받았어요? 미안한 마음 안 들어요,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지자체와 부처를 그렇게 정당화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니, 정당……

○**조정훈 위원** 이것 반납받아서 다른 데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빚내서 추정 했고 또 빚내서 예산 짜는 판에 이것은 징계감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겁니까? 왜 받아야 될 돈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돈 안 낸 지자체 돈 주지 말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일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저희……

○**이소영 위원** 지자체가 어디인가요?

○**조정훈 위원** 이름을 말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잠깐만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전문위원, 여기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환경부는 감사원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과 반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이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취지인데 뒤에는 제도개선이라고 해

봤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확인하는데 의원실에서 저희가 서면질의를 받을 때 서면질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면질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그게 제도개선 요구라는 것은 확인해 봤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저희 조사관들이 의원실하고 다 확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느 문구에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제도개선이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물어봐서 이게 제도개선이나 주의냐 라고 다 체크하고……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감사원 감사 요구는 결산에서의 가장 강력한 조치사항 요구 아닙니까. 그게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제도개선이라고 하니까 이게 영 앞뒤가 안 맞는 것……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정대영 이 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은 감사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 해서는 징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의원실에 확인했는데 의원실에서는 또 제도개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소위원장 박형수 뒤에는 또 징계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자체를 징계할 권한이 환경부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감사원이 지자체를 감사하고 징계하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문장이 섞여 있어서, 환경부에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징계는 일단 빼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해 오라고 하고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하고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물론 환경부에도 야단을 치는 것은 맞지만 환경부가 감사원을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감사해라, 전라남도를 감사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것은 가능하지요. 환경부가 이게 반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계속해서 반납을 받지 않고 다음 해에 또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느냐 이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가능한 거지요.

○김성희 위원 그런데 여기 뒷문장이 ‘지자체를 징계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환경부와 감사원이 협동해서 지자체를 감사하라는 식의 요구셨던 것 같은데 제도개선이 맞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지요, 그러면 두 개 다지요. 지자체에 대한 징계든 감사든 요구를 한 거고, 앞에는 환경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취지로 충분히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일단 궁금한 게 ‘올해 말까지 이게 수납될 예정이다’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이소영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개 지자체에 대해서 미반환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

는지……

○**환경부차관 금한승**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검토보고에서 당초에 지적됐던 18년부터 22년까지 오래 누적되어 있는 지자체 지적받은 데는 전담하고 전북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정산했고 여기 지금 표에는 23년에 90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 못 쓴 금액은 지금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이고요. 11개 지자체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4개 지자체하고 경북, 경남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정산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그런데 다만 2022년까지 누적된 데가 좀 심한 게 전담하고 전북이라고 말씀드리고, 전담하고 전북이 8월 달에 정산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부를 했고 그 고지서에는 올해 연말까지 납부하도록 저희가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8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지만 2021년부터 계속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원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 반납 안 되면 그만큼 삭감하고 주든지 이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 뒤에 21년·22년 누적된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액수가 좀 늘어난 게 전담하고 전북에서 그때 액수가 많이 체납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전체가 여기에서 매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고 ‘우리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뭐 또 넘기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못 챙긴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관련 지자체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 이런 반납금액까지 다 확인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패널티를 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 관리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형수** 예.

○**임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 심사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재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지금 23개 부처에 1조 400억가량의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은, 미납금들이 있습니다. 정산을 하면 매해 3월까지 보조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남은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 보건복지부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거기는 한 5000억 정도가 있고요. 환경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 합치면 1조 400억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환경부는 이것 지적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진작 하셔야 하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

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반납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봤더니 다 전화로 일일이 한대요. ‘너네 이것 보조금 줬는데 얼마큼 집행했어? 어느 정도 남았어?’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따로, 환경부에 대한 조치 따로, 이 2개가 분류돼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형수 예.

○조정훈 위원 저도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0% 동의하고요.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아까 보건복지부 등등 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조금 배부하고 미반납된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 아까 1조 얼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자체가 상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마치 자기들…… 이것 지금 보조금 받고 남은 잔액이니까 돈 없다고 얘기할 근거도 없어요. 줬는데 안 쓴 건데 왜 이것을 안 주겠어요? 딱 데다 쓴 거지요. 이것 감사원 감사를 저는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저는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 돈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페널티를 부처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관님, 이미 그런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은 반납하는 조항만 있고 벌칙조항은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지자체로 가는 다른 돈을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방교부세예요.

○조정훈 위원 예, 보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반납을 안 하면……

○김대식 위원 교부세 안 준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방교부세를 깎아 버릴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 반환 안 한 금액만큼을 교부금에서 그냥 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니까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보다 더 빼야지. 그래야지 페널티가 되지.

○조정훈 위원 이자 플러스로, 고리대금 최고로 해서……

○이소영 위원 고리대금……

○조정훈 위원 그것은 회의록에서 빼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입니다. 우리들 의견은 아닙니다. 속기록 삭제.

○조정훈 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 예, 그것은 삭제해 주시고요.

사실 작년·제작년 2년 동안 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낸 것을 삭감한 것은

중앙부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내려온 것을 이 사람들이 반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도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교부금을 삭감하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삭감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사족처럼 달아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다고 안 쓴 돈을 만들 수는 없지요.

○임미애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여쭙어볼게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노종면 위원 속기록 아무리 삭제해 달라고 해도 삭제 안 되지요? 초선도 압니다.

○임미애 위원 아, 삭제 안 돼요?

○노종면 위원 예, 삭제해 달라는 그 기록만 남습니다. 초선도 아는 것을……

○조정훈 위원 아니, 뭘 또 그렇게……

○노종면 위원 초선도 아는 일이라는……

저기 여쭙어보고 싶은 게요, 국회에서 이전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적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번이?

○환경부차관 금한승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요 지금 총액으로 과다하게 미납한 지자체가 두드러지는 데가 있나요? 어디라고 언급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특정 지자체가 특히 반납을 안 하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게 비중으로 치면 한 2개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든가 이렇게 좀 러프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까 말씀드린 오랫동안 누적된 데는 그 정도……

○노종면 위원 그런 데의 비중이, 아까는 2022년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에 급증하잖아요, 1000억 가까이?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노종면 위원 여기에도 그동안 못 냈던 지자체의 미납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노종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2022년까지를 다 더해도 2023년의 반도 안 돼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래 그동안에 국고보조금 정산하는 패턴이 바로 그다음 해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한 2년 정도 걸쳐서 일어나고 있어서요, 23년 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 회수를 다 안 했기……

○노종면 위원 지금 실제로는 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아직 체크 안 된 게?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반납을 받게 되면 여기서 숫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2023년도 990억 이것은 언제 발생한 반납이예요? 이게 체크가 된 게 2023년이고 2022년·21년 것까지 다 합산된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23년 예상 금액인데 아마 이게 지적하실 때 그 시점에서 계산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올해도 계속 반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 조금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속 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노종면 위원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회수하는 것보다 미반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전기차가 좀……

○노종면 위원 그리고 그게 아니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2023년에 특별히, 다른 해에도 그 이전 것이 반영됐을 텐데 2023년 기준 990억 이것 왜 이런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작년에 특히 전기차 화재나 또 그다음에 신차가 안 나오는 관계로 전기차 이 사업 전체 자체가 실집행이 부진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런데 부진하면 안 썼다는 거니까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납의 용이성은 해마다 다 똑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1조를 안 쓰면 1조를 다 반납 안 하는 구조라는 거네요, 지금?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니……

○노종면 위원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니까 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했던 게 있고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좀 관행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이 수치가 23년 갑자기 는 것은 그 당시에 사업 자체가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소위원장 박형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제가 좀 정리해서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기재부2차관님 말씀하신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순히 환경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돈을 먼저 주고 반환받는 과정에서 반환하지 않아도 벌칙규정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부 말고도 이런 유형의 국고보조사업에서는 다 이 환수의, 환급 받는 것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중앙부처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정훈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이것을 뭐 환경부에 대한 무슨 감사 요구라거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징계라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기재부나 행안부 둘 중의 어느 부처에 대한 거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종합관리 또 국고보조금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부처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든 어떤 요구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환경부에 대한 이 특정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소위원장 박형수 저도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한말씀 여쭙볼게요.

미반납 사유를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차관 금한승** 대부분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환경 관련 자체 업무가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반납금을, 반납하게 되는 돈을 다시 그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자체마다 중간에 보통 6월이나 하반기 때 이게 정산이 완료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추정으로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해에는 못 반영했다 이런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문서로 확인해 본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차관 금한승**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돈이 그대로 있기는 있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아무래도 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소위원장 박형수** 괜히 다른 데 쓴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상당히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성희 위원** 전용은 안 되지요, 주머니가 다른데.

○**조정훈 위원** 설마 전용을 했을까……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제가 아직 덜 끝났어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진짜로 돈이 보관돼 있는 것인지 판 데 써 버린 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써 버렸다면, 환경부에서 이걸 알고도 그대로 놔뒀다면 환경부도 책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든 뭐든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이소영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보니까 심사자료 1권에, 우리가 기획재정부를 순서를 뒤로 미뤄 놔서 이걸 못 보고 지나갔는데 심사자료 1권 180페이지의 연번 4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미납금 환수 체계 마련 필요’라는 제목하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무공해차 보급사업 이 건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23개 부처 1조 140억 원이 반납되지 않아서 미수납 처리되어 있는 문제가 여기 지적이 돼 있어서 조금 이따가 오후 시간에 기재부 이 연번을 처리할 때 이걸 병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그걸 거기다 병합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부별로 다른데 병합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합시다. 이 항목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기재부 이따가 그것 심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때 같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그러시지요.

○**조정훈 위원** 저도 잠깐만 한마디……

아까 고리대금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노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 해

주셔서.

제가 말한 건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대출을 해 주고 만약에 반납을 안 하면 또는 점포를 폐쇄할 때 반납을 안 하면요 강제 추징을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2년, 3년 그리고 이렇게 몇천억에 대한 돈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징당하는 분들이 알면 열불이 터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입니다.

서로 다 공직자끼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봐준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자까지 쳐서 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이걸 굉장히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상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깁니다.

○**김성희 위원** 이것 보류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궁금한 것 마지막으로 여쭙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간 돈은, 기재부차관님도 의견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려간 돈은 주머니가 따로 있어서 이 돈을 안 쓸 경우에 이 돈을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허락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거나 이럴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돈은 거기에 있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다른 것들 해서 못 갖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절차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거고. 추경을 안 할 경우에 못 돌려보내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올해는 돈이 급하니까 일단 갖다 쓰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범죄인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기재부나 환경부는 확인하셨어요? 계좌에 돈 있어요? 은행 잔고 확인하셨어요? 이러니까 감사원 감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요. 환경부에서……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방의회가 다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가 법적인 절차 없이—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없으니까요—환경부가 내준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썼다는 전제하에 지금 논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런 전제하에서는 돈을 빼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하자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썼다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고요 반납 안 했다고……

○**김성희 위원** 아니요, 다른 데 썼다는 전제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환경부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건 국고보조금이 지방의 재정으로 들어

가면 그 재정의 통장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출금 내역에서 항목이 다 따로 있어서 계좌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한꺼번에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이름표가 달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로만 되어 있는 거지요.

○**김성희 위원** 아니, 추경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갖다 쓴 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지방자치단체 도둑 만드는 건데……

○**임미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갖다 썼다는 게 아니고요.

○**김성희 위원** 아니, 갖다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임미애 위원** 아니, 갖다 썼는지 안 갖다 썼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게.

○**조정훈 위원** 모든 보조금이 한 계좌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미애 위원님은 그 얘기예요.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은 통장에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왔다, 1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다 쓰고 여기에다 쓰고 그러면 국고보조금 남은 것 어떻게 됐나, 이 통장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노종면 위원** 통장이 들어오는 것 있고 집행하는 통장이 따로 있겠지요.

○**김성희 위원** 아니, 제 전제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돈이 들어온 게 없는데 나가는 계획을 짜서, 예산을 시가 짤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가 허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한 통장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질, 전용될 확률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자치단체장을 구속시킬 일인 건데 이걸 지금 얘기를 섞어 가지고 마치 자치단체가 계정 안에 있는 돈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하고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지요. 아까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물어본 것이 실제로 다 확인해 봤느냐. 그것은 자치단체가 쓸 수도 있지만 그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다 열어 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이것은 안 되고 이것 전제하에서만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려면 미리 환경부에서 다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다라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이소영 위원** 아니, 기재부차관님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있지요, 형식과 실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온갖 부처에서 보조금 100개를 받아요. 보조금 100개를 받으면 통장 100개를 다 따로, 여기는 농협·KB·신한은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하나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김성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여기 친환경차 보급해 가지고 국고에서 100억 원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세입 해 가지고 100억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안 썼어요.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지 이것을 다시 여기서 세입을 별도로 또 추가로 받은 것처럼 해서 산업부 보조금 수입 10억 해서 산업부 보조금 지출 10억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대식 위원** 아니, 그것은 쓸 수 없지요. 그것은 쓸 수 없는데, 임미애 위원이나 제 생각에 전체 통장이 하나인데 거기에 100만 원이 들어 있다 이러면 이 항목에 10만 원 쓰고 이 항목에 10만 원 쓰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인지 이 돈이 이 돈인지……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너희 돈 남은 게 얼마나, 8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80만 원에서 환경부에 반납할 게 얼마나,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계리는 하는 거지요. 계리는 하는 건데……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것을 썼다는 게 아니고.

○**조정훈 위원** 아니, 저는 이걸 좀 논쟁이 길어져서 유감이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실은 이 모든 문제가 지자체가 보조금을 미반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반납했으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에요. 그러면 미반납했으면 미반납한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은 다들 동의한 대로 이걸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부처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로 누적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미반납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이고.

그동안 왜 미반납했는지에 대한 여부, 이게 단순히 절차적 문제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저는 감사원 감사까지도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환경부의 경우는 2018년부터, 또 다른 부처는 더 오래 누적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금액들이 왜 아직도 반납되지 않고 있었는지, 중앙부처는 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는지, 저는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낸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조정훈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고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을,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가지고 있는 돈 이상을 쓰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쓸 수 있지 자기가 다른 데서 받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횡령하거나 전용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납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설명을 전문위원님도 하셨지만 추경 편성을 못 해서 그다음에 해야 될 걸 그다음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돈이 있는데 안 주거나 혹은 돈을 다른 데 써 버려서 못 주거나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와 도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문제 지적을 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전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정하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거는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각자의 의견들을 개

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류를 하고 기재부 것과 같이 논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났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환경부 소관에서 아주 경미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171페이지입니다.

전기·수소차 보급하고 관련된 데 보시면요,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가 위에서부터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매칭 참여 유도, 전액 국비사업 전환, 소관 부처 이관 등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산시킬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하고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이어서 국비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자체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액 국비사업 전환’ 이 문구는 좀 제외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거는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질의에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전기차·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5000억이 넘는 감액안을 원래 제출을 했었지요,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 금한승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주된 이유는 이게 정부의 목표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차량 대수 그리고 보조금 금액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신청 대수가 정부가 계획한 것만큼 신청되지 않아서 불용이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전기차 보급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매년 이행해야 되는 대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자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우리는 100대만 할래, 우리는 1000대만 할래, 이게 합산이 국가 목표에 매우 미달하더라도 사실은 국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 말고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이소영 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정되어 있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보조금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서울시에서 전기를 사는 사람은 지자체 보조금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조금 더 의지가 있는 지자체, 예를 들면 제주도랄지 어디랄지 이런 데는 지자체 보조금을 500만 원까지 받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은 차를 사는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국고보조 3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50만 원 해서 350만 원을 받고 다른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차량을 사는데도 국고 300만 원에 지자체 400만 원 해서 700만 원을 받고, 이게 전혀 체계가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전환돼야 된다는 지적을 제가 지난 추경 때부터 여러 차례 드렸던 거고요.

그중에서도 전액 국비사업 전환이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넣은 것은 이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금액과 대수를 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천만이 모여 사는 데인데도 지자체가 신청한 수량이 1만 대밖에 안 되고 그거보다 인구가 훨씬 몇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몇 대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거기는…… 대수를 잠깐, 저희가 기억 못 합니다.

○김대식 위원 많다고 치고.

○이소영 위원 서울보다 훨씬 많은 대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사실은 이게 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탄다고 해서 그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전기차 지원 예산의 불용, 특히 서울 같은 데들 또는 세종 같은 데들, 젊은 사람들 많이 살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빨리 동이 나서, 지자체 보조금이 빨리 동이 나서 정부 보조금은 5000억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도 전기차를 살 수가 없고요. 5분 만에 클릭으로 마감이 돼서 신청이 마감돼 버리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이 대수가 남아돌아 가지고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생기고.

이거를 오히려 정부가 책임 있게 우리가 전기차 1년에 몇만 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어떤 가격 차이나 수요 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 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하든 아니면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율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자체에 다 맡겨 놓고 지자체 하는 만큼만 우리는 매칭해서 보조하겠다, 지자체는 돈이 없는 지자체가 많으니까 신청을 적게 하지요. 그러면 목표 미달성, 이게 정부가 무슨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냐라는 차원에서 차라리 이렇게 매년 수천억 원씩 불용을 일으키고 목표 달성이 물 건너가고 이렇게 할 바에야, 그리고 지자체별로 형평도 맞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지자체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몇백만 원씩 보조금 차이가 나게 할 바에야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비보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진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 저도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저희 농촌에서는 전기화물차 확대 보급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는 추가 보조금이 30%인데요, 농업인의 경우는 추가 보조금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사실 이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자체별로 보조금 매칭 비율도 다르고 균형도 다르고 또 각 지자체별로 배분되는 물량도 달리하고 있어서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이게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보조금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신청한 만큼만 저희가 보급 대수를 배정해 주는 걸 탈피해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NDC 달성을 위한 목표치가 있고, 예를 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 인구에 비례하든지 아니면 성별도 좀 고려하는지 아니면 경제활동인구도 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물량도 배분이 되고 보조금도 서울시처럼 그렇게 아주 낮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할 수 없도록 보조금 하한을 둔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조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지자체에 휘둘리지 말고 중앙정부가 좀 책임지고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면, 저희도 사실 소관 부처 이관이라는 표현도 저희 부의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불편한 용어긴 한데요.

그래서 취지가 그러시다면 지자체 매칭을 좀……

○조정훈 위원 어디로 가는데요? 부처 이전을 하면 어디로 가요? 산자부?

○이소영 위원 제가……

일단 말씀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러니까 ‘지자체 매칭 참여를 제대로 유도하고 불균형적인 보조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것’ 이런 정도로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전액 국비사업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책임 있는 국비 지원 방식 마련’이라거나 이렇게 표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요.

소관 부처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환경부가 지금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자체를 압박해서 대수를 더 받아 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부에. 이것 제대로 안 하면, 정부가 수립한 계획만큼 하지 못하면 다른 길로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부처가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환경부차관 금한승 위원님, 그래서……

○이소영 위원 저는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편하실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환경부가 이것을 해 왔는데 목표를 계속 미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이 수천억 원이 발생한다고 예산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5000억 원을 깎아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저는 어떤 중앙부처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아무리 기재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5000억 원을 삭감해도 좋다고 추경안을 올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철저한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것 소관 부처 이관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나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기차는 전자제품의 일종인데 전기, 에너지, 충전 이것 관련해서는 산업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친환경차가 환경부에 업무가 배정됐던 이유는 여기에 하이브리드라거나 이런 사업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 법률이 됐던 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전기차는 전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가스를 측정해서 오염도를 낮추거나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속 전자제품인 전기차를 환경부가 보급하는 게 맞겠느냐 그리고 환경부가 보급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점에서 제대로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환경부도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하여튼 이것 정리합시다, 너무 오래돼서.

○노종면 위원 저 질문 있는데요.

여기 이소영 위원님 요청하신,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보조금 확대는 없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국비 확대 방안을 해 보자는 거예요. 책임 있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급을 확대시키려면 보조금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정책 목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소위원장 박형수 그 뒤에 쓰여 있네요. ‘보급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노종면 위원 그 방안 안에 보조금 확대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보조금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럴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되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른 나라는 경쟁……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자국에서는 보조금 지급 안 하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렇지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미국 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합니다.

○노종면 위원 일본도 하고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합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자국산 배터리만을 차별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경우도 중국산 제품을 저희가 똑같이 대우는 안 하고요. 대신 메이드 인 차이냐로 된 제품은 못 사겠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위주로 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업체하고 외국 업체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구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 세계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배터리 성능도 좋고 배터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하면 일본에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한…… 일본에서는 수입차잖아요.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고요, 자국하고 동일하게?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마 일본은 주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대세로 가고 있어서 그런데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랑 유사하게, 지금 기재부2차관도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약간 차별은 되지만 보조금 자체를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미국도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동등하게 보조금을 준다고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정리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노종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합시다.

여기는 환경부에서 소관 부처의 이관 등을 빼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소영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으셨고.

○이소영 위원 제가 문구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 이관 검토 등’이라고 해서 ‘검토’를 넣으시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검토를 넣고 앞의 ‘전액 국비사업 전환’은 ‘책임 있는 국비 지원방식 마련’ 이렇게 완화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참고로 한 말씀만 이소영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예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사업들, 특히 지자체와 사업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자체를 회의에 한번 모아 놓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예산 중에 지자체로 내려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자체 회의할 때도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관련된 환경 SOC 예산도 보급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예산 지원을 연동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버스 정책을 국토부가 하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 내려보낼 수 있는 정책이나 보조금 국토부가 훨씬 더 많은 정책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처 간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 가지고……

○환경부차관 금한승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게 이것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 있고 효율

적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만 정리합시다, 이제. 이 얘기 하느라고 30분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됐지요?

환경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차장 김승희** 기상청 차장 김승희입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이정환** 기상청 기획조정관 이정환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98쪽, 연번 2번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관측장비의 보안 취약성, 조달·평가 체계의 미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에 보시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차장 김승희** 저희 시정요구사항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청되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것은 상임위에서 제도개선 의견이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 정대영**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만 이견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두 번째 것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취지이신가요?

○**기상청차장 김승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상임위는 제도개선이라고 한 게 아닌 거지요?

○**기상청차장 김승희**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말씀은 두 번째가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 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건 사실과 다르지 않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기상청차장 김승희** 같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김성희 위원**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어요?

○**기상청차장 김승희** 아, 내용은 다릅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제도개선 의견이고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고 지금 그렇지요?

○**기상청차장 김승희**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 해 달라는 그런 취이지요?

○**기상청차장 김승희** 제도개선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저는 원래 한기호 위원님하고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조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해 쌓인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식의 기계와 관련된, 장비 도입과 관련돼서 기상청이 항상 문제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냥 어몰쩍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상청차장 김승희** 위원님, 설명을 지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예, 설명을 다시……

○**기상청차장 김승희**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보안 관련된 지침을 강화해서 새롭게 기술평가 할 때 이런 사항이 발견되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 조항을 반영했고 그동안에 발견됐던 4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제도개선된 대로 보안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지금 장비 전체를 전부 중국 거를 씁니까? 원래 중국 제품 성능이 제일 우수해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상청차장 김승희** 가격이 좀 싸고요, 일단은 가격도 싸지만 장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는 우리나라 것도 있고 어떤 장비는 외산이 있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된 장비는 대부분 중국 업체 것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원래 어떤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후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했고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다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관련된 절차를 다 취소해서 관련 제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난해 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께서 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의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기상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관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옥 기초실장직무대리 이현옥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고용노동부는 다섯 꼭지입니다.

먼저 241페이지, 연번 10번 고용보험기금 총괄입니다.

이 총괄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연례적 위반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동그라미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시정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주의, 세 번째 동그라미는 상임위 제도개선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시정에 대해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상임위에서 주의 한 대로 수정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실업급여계정 전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편 방안도 검토하기 때문에 제도는 시정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조정훈 위원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가만있어 봐.

뭘 시정으로 해 달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모성보호 지원 증가로 악화 된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입니다. 관련해서 원래 상임위에서 주의였는데 천하람 위원님 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상임위에서 한 대로 주의로 했으면……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차관 얘기하는 거하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거 내용이 다른데?

○전문위원 정대영 아니, 첫 번째 동그라미가 상임위가 주의를 천하람 위원이 시정인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시정하고 있다고 해서 시정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조정훈 위원 상임위 의견 받겠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상임위에서 저희가 얘기한 게 주의를 받았는데 그 주의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첫 번째가 주의로 해 달라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주의로.

○소위원장 박형수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상임위에서 주의로 했는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이거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견 없는 거고, 세 번째 것도 이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55쪽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2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저희 논의한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 문단 하나만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고용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여기에 지금 2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정이 있고요 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급여계정에는 돈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고용안정·직능계정에는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문구를 만들어 주신 김에 ‘분담하거나 고용보험 계정 간 보험료 재조정 등’ 이 문구를 하나 더 넣어 주시면 고용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훨씬 더 탄력을 붙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렇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그렇게 추가하는 것에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55쪽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는 시정을 주의로 한 단계 낮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이 사안은 왜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30.6%인데 구직촉진수당의 취업 관리 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그런데 6개월만 하면 저희가 한 26.3%인데 1년의 전체적인 관리 기간을 가지고 취업률을 내 보면 59.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취업률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재취업률보다 낮지는 않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6개월 단위 그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는 하는데 다만 이 유형 조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57쪽의 연번 3번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 대상자 중심 지원방안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한기호 위원님하고 김기웅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제도개선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다만 문구를 보시면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감안해서 저소득 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이런 문구를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 제도가 소득 상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하고 재산 수준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에 대해서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의 부대의견하고 맞춰 주시면 이 두 취지를 저희가 잘 혼합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구체적인 문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부대의견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소영 위원** 267페이지 맨 위에 있는 부대의견 얘기하시는 것 맞나요?

○**임미애 위원** ‘실제 모든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내용이 257페이지 3번의 제도개선 문구가 되면 부대의견에서는 빼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나중에 부대의견은 따로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실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미리 말씀드려 놓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제도개선은 받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59쪽, 연번 5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부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모성보호계정이나 실업급여계정 관련된 내용들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고, 특히 여기 ‘30% 이상 일반회계 지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해서 30%라는 말은 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치를 빼 달라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수치 30%를 빼고 ‘일반회계 지원 확대’ 이렇게 수정하고 유형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어차피 이게 제도개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이게 몇 % 지원을 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법상 특정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한 14%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30% 지원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냥 정책적 요구인 거지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내용도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일반회계 지원 및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거나 계정 간 보험료 재조정 등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각적인……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안을 검토할 것.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다음에 시정요구 유형은 지금 시정에서 무엇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박형수 두 단계인데? 원래 한 단계씩 요청을 해야 되지 두 단계를 막 건너뛰어서 요청하면……

○조정훈 위원 아니, 이게 꼭 고용노동부가 잘못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소영 위원 제도개선인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 정책 제안인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정책 제안이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260쪽, 연번 6번입니다. 구직급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부터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한기호 위원님하고 천하람 위원님 두 분이 제도개선과 하나는 시정을 하셨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아니, 잠깐만. 지금은 첫 번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도개선할 정책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취업 지원이라든지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도 마찬가지로네요.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요청이니까.

○이소영 위원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네,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잠깐만, 이 건은 해마다 지적된 사안 아닌가요?

○조정훈 위원 맞지요, 굉장히 이것은 뭐……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반복된 내용이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제도개선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하거나 묶어서 이런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26년 예산 검토하기 전까지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런데 사실은 고용보험제도의 계정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문제이기 때문에 26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이것을 보고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장의, 노사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반복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정수급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정 부분 부정수급도 있고, 5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일자리의 불안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로자나 노동자의 누구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 구조적으로 우리 일자리 문제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조적인 문제가 본질인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도개선.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일단 제도개선으로 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정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조정훈 위원** 이것은 시정인데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그 지적 내용을, 부정수급에 대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라는 쪽에 초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걸 존중하는 걸로 합시다.

두 번째 동그라미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대영**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견 없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 했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기재부가 의견 하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장님, 저희 간단한 문구 수정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간단하다 그러면서 하면 엄청 길더구먼, 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05페이지예요……

○**노종면 위원** 그러면 205페이지 넘어가기 전예요 261쪽에는 이견이 없는 거지요? 저희 의원실에 준 자료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261쪽 이것 시정 수용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05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한 문구 수정인데요, 현재는 문구가 ‘장기간 정상화되지 않은 국가자격시험 수수료’인데요 이것을 ‘장기간 인상되지 않은’ 그래서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뒷부분은 ‘수수료 정상화를 추진할 것’ 이것을 ‘수수료 인상을 적극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수수료 인상을 적극 검토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이게 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거예요?

○노종면 위원 그러면 이것 다 국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노종면 위원 국민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입장과 달리 너무 노골적으로……

○김대식 위원 지금 노동부 산하에 자격시험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자격증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인노무사를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자격증이 제 기억으로 한 백……

○김대식 위원 백 몇십 개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아니요, 지금 37개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증.

○김대식 위원 산업인력공단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산업인력공단.

○조정훈 위원 이게 적자 규모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런 제안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호텔경영사 같은 경우 수수료가 97년에 2만 원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는데, 그래서 적자 규모가 얼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지가 한 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이 문구는 그대로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인상하라고 부담을 지우는 걸 국회에서 하는 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정상화 이 문구를 그대로 두는 걸로 합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실 기재부는 이 인상하는 데 반대를 해요. 왜? 이걸 인상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수지가 좋아지는 측면은 있지만 기재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물가관리거든요. 이 수수료가 물가 인덱스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부는 매번 ‘수수료 인상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희가 사실 주저주저해 왔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김대식 위원 그러면 차관님, ‘인상을 적극 검토할 것’ 이것을 오히려 빼야 되겠네. 기재부에서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적극 검토’로 바뀌서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원안대로 하셔도……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고용노동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2차관 강희업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355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항공기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항공안전 감독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상임위에서도 주의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58쪽입니다.

연번 1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상시화 시 국고보조율 상향 검토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제도개선인데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율 상향으로 지자체의 부담은 감소할 수 있지만 수혜 인원이 줄어들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수혜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왜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러니까 총액이, 지자체의 예산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율이 올라 버리면, 실제로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총인원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 부담이 커지면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지 총액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미애 위원** 사업 규모를 더 키우지 않으면 수혜 인원이 준다 이 얘기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러니까 국고보조율을 올려 버릴 경우에는 예산을 같이 키워 줘야지만 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오늘 제출된 2026년 예산안의 총액 기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6년 예산안에는 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본 예산 대비로 많이 늘어나 있고요. 추정 하면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늘렸는데 추정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조정훈 위원** 얼마입니까, 규모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규모가 이게 한 13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사실은 최종적인 의견은 소관 부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구를 삭제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올리면 단가가 높아지니 수혜를 받는 사람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구를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율 상향이라고 이렇게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을 결산심사 때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게 지금 국비보조율이 50%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50%가 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가 지금 키워 가지고 확대해서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국고보조율이……

○**소위원장 박형수** 일단 ‘상시화될 경우 현행 50%의 국고보조율은 지방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한번……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게 뭐냐 하면 현행 50%보다는 더 늘려 줘야지 지방의 부담이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사업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현재는 월세 20만 원 24개월 하는데 한시사업이라는 의미는 24개월이 한시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한다는 소리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게 지금 2년 단위로……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상시화한다는 거는 24개월을 넘어서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간다는 소리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여기서 상시화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냐,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잔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그 시점에, 코로나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뭔가 사업을 같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22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25년 2월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걸로 원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년들 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네’ 그래서 25년 2월까지 해서 원래 사업을 끝내야 되는 데 이거를 26년에도 하고 27년에도 하고 계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스킴(scheme) 자체를 바꿨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미 바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 내용인 겁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그리 바꾸면 왜 지방 부담이 커지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5년 2월까지 해서 끝나 버렸으면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니 계속 50%는 지방도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 지방재정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 위원처럼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려면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을 줄이고 국비로 많이 해라 이것은 타당한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그것은 원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깐요. 그런데 한시사업으로 하던 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비보조율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년간 국비보조율을 높여 가라는 논리랑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도 이런 보조율이 없으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러면 중앙에서 이 사업을 폐지를 하든지, 중앙에서 사업을 계속하자고 하면서 지방에다가 계속 부담을 지우는……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중앙이 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를 계속해서, 그런 매칭을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원래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지금도 지방이 신청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강제가 돼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 지방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주로 이 사업은, 그러니까 대학가가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대학가 주변이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게 대학가만 특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다 신청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삭제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삭제를 하는데 이 조항은 삭제가 되지만,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할 것’ 이것은 삭제되지만 이 사업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이 신청하면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조정훈 위원 예.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지요, 뭐.

○소위원장 박형수 아, 지방이 재정 여력이 되는 지자체만 신청해라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또는 대학생이 많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지자체 대학생이 없는 데 뭐 이것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하던 것을 중앙정부가 조금 도와줬는데 이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이게 아예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잡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매년 올려야 돼요. 모든 사업의 국비보조율을 매년 올려야지요, 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경산처럼 대학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경우는 지자체가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제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경산 쪽에서 문제 제기하신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왜 경산만 그럴까? 물론 경산이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경산이 교육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국비 50, 지방비 50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25, 25 해요. 그런데 경북만 15, 35 하더라고요. 그러니.....

○노종면 위원 기초가 35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이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의 어떤 무리함에 대한 의견은 알겠는데 국고보조율이 상향이 되면 왜 수혜자가 줄지요?

○임미애 위원 예산 규모를 키워 주지 않으면 준다 이거지요.

○노종면 위원 아니, 지금 상태에서 비율 조정을 하면 왜 수혜자가 줄지요?

○조정훈 위원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총액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키워 주지 않는 한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100만 원씩 100명 줄 수 있는데 200만 원으로 늘리면 그게 50명으로 줄어드니까.

○노종면 위원 아, 국가 예산이 제약돼 있다는 전제에서?

○김성희 위원 저도 50% 정도면 기재부가 할 노릇은 하고 있는 거라고 봐서 이것을 상향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삭제.

○소위원장 박형수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61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국토교통 혁신펀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혁신펀드 출자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 시정요구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타 부처도 모태펀드 일시납입 중이고 운용사가 투자 시마다 출입금이 납입되는 펀드 구조상 투자 신청 금액 예측이 불가하여 분할 예산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특허청의 IP 직접투자 펀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희 부처는 시정요구의 삭제를 요청드리는데 그 이유는 투자 시점 금액 예측이 불가해서 분할 예산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이고 앞서 있었던 특허청의 IP 직접투자 펀드의 경

우도 단기적 출자 방식의 전환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해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같은 성격의 펀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같은 결정을 내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가 지적했으니까 제가 한말씀드릴까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이게 펀드를 할 때 정부 것은 다 출자를 하는데 민간출자 부분은 다 출자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펀드 금액 전체는 100억인데 그 해에 출자된 것은 10억 이렇게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100억을, 정부 것을 다 투자를 해 가지고 통장에다 그대로 묵혀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필요할 때만 적시에 펀드 금액을 출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기본 취지이고. 이런 지금 펀드 운용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예. 당연히 반대의견이겠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이런 항목도 있는 모양입니다. 주무 부처에서는 이 시정요구사항 삭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취지는 소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래요. 기재부로서는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니까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들 지금 이해는 하셨을 테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아마 위원장님이, 문제의 시기 24년에 보면 정부출자, 민간출자 금액에 비해서 투자액은 상당히 적네요. 나머지 잔고는, 특히 정부출자는 그냥 통장에 넣어 두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조정훈 위원 왜 이렇게 실제 투자금액이, 23년은 그나마 좀 정부출자에 비해서 60~70%, 80% 투자를 하셨는데 24년에는 이게 정부출자에 비해서 한 10%도 안 되네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담당 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예.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과장입니다.

동 펀드가 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출자를 하게 됩니다. 운용사가 12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운용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 출자처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운용사가 12월 달에 선정이 좀 늦게 되다 보니 당해 출자처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 펀드에 대해서 10억밖에 출자가 안 된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25년도에는 운용사 모집을 8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해 투자의 금액이 상당히 높게 전망이 될 것 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21년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당해 42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투자는 각 펀드의 출자 운용사의 선정이라든가 투자처를 어떻게 발굴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형수 지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늦게 선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애초에 전체 규모의 그걸 다 출자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중간중간 여러 가지 펀드를 운용할 때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단계들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은 다 출자해 놓고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조정훈 위원 24년에 150억을 확정했는데 운용사를 왜 열두 달이나 걸려서 확정합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다시 한번……

○조정훈 위원 24년 운용사 확정이 12월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저희가 운용사를 모집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전부다, 한국벤처투자가 모든 펀드를 다 운용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운용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순번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처가 좀 늦은 순번을 받게 돼서 운용사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제도적 문제네요. 매년 마지막 번호 부처들은 11월, 12월 달에 운용사가 결정되면 똑같은 일들이 국토부 아닌 다른 부처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예. 모태펀드는 중기부가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벤처투자라는 곳에서 전반적으로 운용사를 모집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시불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 부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서서 특허청에 관해서 심사를 하셨는데 특허청에 대해서는 일시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용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왜 이렇게 대기번호가 늦었습니까, 24년에?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조정훈 위원 그것 누가 결정을 합니까?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중기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소영 위원 참고로 위원님들 의사결정에 참고되시게…… 지금 2권의 215페이지 특허청 부분을 보니까 아까 저희가 심사할 때 모태조합 출자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특허청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단계적 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돈을 받아서 자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운용사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문구를 수정하면서 ‘신속한 실투자 집행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일단 통과시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동일한 성격은 아닐 텐데 일단 지금 여러 번 국토부가 언급한 게 2권의 215페이지 내용이다 이걸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의견을 다 개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특허청 부분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펀드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아마 문체부도 또 있을 건데 아까 특허청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보류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그건 이미 결정했는데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다시 소환해 갖고 어떻게 하자 그러면 못 하잖아요.

○조정훈 위원 재의결할 수 있어요? 변안할 수 있다……

○전문위원 정대영 변안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이견이 있다에 동의 하십니까?’ 해서 ‘동의합니다’ 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소위 심사 끝날 때까지 하면 되나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검토를 해 봅시다.

일단 오늘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63쪽입니다.

363쪽, 연번 6번입니다.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주의하고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저희는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사업구조상 입주자가 직접 주택 물색 후에 계약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향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저는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주의 의견을 주셔서……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에 동의하면 저도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저도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입니다.

364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관련인데요,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의 시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출연금의 경우에 내부적으로 관리규정 훈령과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 예산총칙을 통해서 지출원인행위 없는 이월도 가능하게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출연금 관리규정을 좀 더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반영……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동의하신다고?

○김성희 위원 예,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질문 있는데요.

출연금의 경우 집행잔액은 보통 어떻게 회계상에서 처리하고 넘기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우리 공단 같은 경우 출연기관인데요—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가—국토부의 승인을 지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월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국고보조금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원활한 그 사업에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임미애 위원 이걸 반납은 안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반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목적이 다 해소되면 그냥 이월하는 거잖아요, 출연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목적이 다하면 이월하는 건 아니고 목적이 안 되면 불용을 시키는 거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불용해서 그냥 이월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내부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킵니다.

○임미애 위원 아,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방식으로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김대식 위원 재이월이 안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기재부가 2건이 이걸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 간단한 문구 수정 2개가 있습니다.

하나 344페이지의 85번, 적정 사업예산 확보가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파트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22년 수준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예산

숫자를 특정하는 게 되니 ‘22년 수준’ 대신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미애 위원 22년도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어서 시정요구한 것 아닐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 취지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결산심사에서 예산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늘려라라고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닌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행이 좀 부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동의해요? 적정 수준으로 하면 이걸 지적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 마나 같은데……

○이소영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고 취지 자체가 좀 명백하게, 거의 한 2022년에 비하면 불과 3년이 지났을 뿐인데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이것을 많이 복원해야 된다는 취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그 취지는 좀 몰각될 것 같기는 합니다.

○조정훈 위원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부진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21년도에는 53%고요 22년도에는 72%입니다. 그런데 23년에는 집행이 잘됐고요. 그래서 특히 22년 숫자를 특정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24년은 얼마입니까, 집행률이?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예산이 24년 집행률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4년, 잠시만요.

○조정훈 위원 국토부는 이렇게 예산 올려 드리면 집행 다 하실 자신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원래 21년, 22년까지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해서 LH보고 이 사업을 요청했더니 실제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집행률이 떨어져가지고 23년·24년·25년 예산이 지금 물량으로 보자면 거의 한 50%대 수준의, 22년 대비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물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예산 집행했던 게 출자와 융자 형태로 가게 되니까 그게 LH에 집행을 못 한 상태에서 적립이 되는 금액이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을 계속 쓰고 있었던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려도 집행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솔직히?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로 그렇게 22년 치만큼 올리게 된다면 일부 아마 다음에 다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적정이라는 수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2년 수준은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차관님,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와서 하세요?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하고 다 협의하에 문구 정리된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가 원래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원래 상임위 때는 저희가 수용한 것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맞고.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

시는 예산 운용의 적정성이 틀리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상임위에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원장 박형수** 어떻게 해야 되지? 문구를 좀 어떻게 수정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쨌든 ‘상향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취지가 담기면서 특정은 안 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소영 위원** 충분히 확보?

○**조정훈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거는 거의 내년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고민 덜하시고 26년 예산안 심사하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증액하시면 되고요. 추후의 예산 설정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2020년 수준, 아까 2차관 얘기한 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하되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 사업 예산을 증액할 것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할 것.

○**임미애 위원** 충분한 수준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

○**소위원장 박형수** 충분한 수준으로 사업 예산 그것도 괜찮겠네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교육 상임위도 이런 일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요청한 분의 생각은 ‘추가 소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두면 예산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노후주택 소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 발굴을 못 하느냐?’ 그거를 답는 게 맞지 않을까, 돈을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추가 소요에 대해 적극적 발굴 대책을 마련할 것’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오히려 취지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 100% 닿으면 예산 더 올려 주면 되는 거고.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지금 이 제도개선 취지는 예산을 어쨌든 그게 적정하든 적정하지 않든 올리라는 게 취지인데 그거를 다양한 사업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우리가 막 바뀌도 될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장님, 344페이지 맨 아래 문장 그 위를 봐 주십시오. 그 위에 보시면 ‘추가 소요에 대한 적극적 발굴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함’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조정훈 위원님 취지가 제기하신 분의 의도에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돼 있네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추가 소요의 적극적 발굴을 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그냥, 오히려 그 위가 훨씬 더 필요하고……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시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박형수** 주거복지 사업의 추가 소요에 대한 적극적 발굴……

○조정훈 위원 적극적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소위원장 박형수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리고 문구 수정 마지막인데요.

32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보시면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통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통한’ 이 문구만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차보상도 감차보상이지만 본질적으로 면허를 새로 내주는 것을 통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런데 이것도 감차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감차에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감차에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문구를 빼는 것이 맞겠는지……

○조정훈 위원 국토부는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상임위에서 이 부분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통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감차보상금이라는 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30% 대고 지자체에서 70% 대고 나머지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이걸 가지고 재원을 만드는 구조인데요, 사실 감차보상금 국고가 7년간 동결이 됐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또 예산 당국의 그런 고충도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저희는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정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대안 문구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차보상 제도를 포함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택시운송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감차보상금 제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면 이것까지, 감차보상단가 현실화도 포괄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직무대리 박상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직무대리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재정담당관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 김주식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행복청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조홍남입니다.

○**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정인권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새만금개발청 있잖아요. 이게 요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김대식 위원** 아니, 역대 정부에서 계속 쪽 이어 오면서…… 새만금개발청 저도 한번 쪽 가서 공직에 있을 때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새만금개발청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 국회에 와서 새만금개발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청이잖아요.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조홍남**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재부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없이 그대로 죽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재부1차관 이형일입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기재부1차관께서 출석하지 않으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소위 자료 1권입니다.

1권 페이지 96쪽입니다.

96쪽, 연번 9번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노종면 위원** 이렇게 이견 있는 게 기재부 몇 건 정도 되나요?

○**전문위원 정대영** 17건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최근 재정운용 성과 부진에 대한 변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보시면 변상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변상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해당 사업은 법적인 의무사항인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등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을 홍보하기 위한 필수 부분입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더욱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재정운용 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의 금전적 손실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변상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적극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상임위 기재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논의되었고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걸로 수정돼서 반영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잠깐만요. 무슨 의견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수정하는……

○소위원장 박형수 제도개선 의견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제도개선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식 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시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사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거여서 다시 한 번 더 기재부의 입장 내지는 각오를 듣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손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님, 이 부분은 세수결손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 앞에 있는 재정정책자문회의가 개최가 잘 안 됐으니 이것에 대한 변상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수결손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세수추계를 잘하고 세수결손이 생겼을 때 국회랑 좀 더 소통해서 확실하게 하자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여러 번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력기반 구축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는 그 전반이 다 이게 뭔가가 틀어지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처의 각오를 말씀드리다면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재정운용 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제도개선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견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8쪽입니다.

98쪽, 재정사업평가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문구 수정을 해 달라는 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전반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 부분 문구에 보

면 원래 현재 하는 건, 1 세부사업 1 성과지표 원칙을 수립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전에 1 세부사업 1 성과지표를 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 미시적이고 형식적이라서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는 내용보다는 차라리 상임위에서 수정한 대로 '재정성과정보를 추가하는 등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라는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임미애 위원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식 위원 '제고하고'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저희가 한자로 '제고하고'라고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높인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조정훈 위원 제가 이걸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이 성과계획서의 기재부 도입에 한 20년 전에 기여를 했다면 한 사람인데요. 그 뒤로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데 고생은 무지 하시고 종이도 엄청 찍어 내시는데 별로 안 쓰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걸 재정성과와 성과평가를 합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면 성과보고서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만드실 때 예산현황 그다음에 집행현황 그다음에 아주 주요한 성과 이걸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서 볼 수 있어야 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이걸 분리시켰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도 개선할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제도개선할 때 위원님 말씀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요. 이번에 나온 내용도 보면 재정성과정보를 추가하라는 게 사실 그런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만 위원님 말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9쪽입니다.

99쪽, 연번 12번 지식협력단지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결산서상 기재 오류 방지 등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안은 제도개선입니다.

○조정훈 위원 제도개선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은 안 들어도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처 의견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2쪽입니다.

연번 15번 일시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한국은행 일시차입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 일치 필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지적의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원래의 원안을 보면 다 일치를 시키라는 것인데 이게 워낙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라 한국은행에서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분기 말 정산이라 이 시기를 주기로 단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월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짚어서 원금 상환일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도록 하기보다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이자 상환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분기 말보다 훨씬 더 단축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위에서 차관님이 출석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의결이 된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그 뒤에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서 가지고 이번에 좀 더 협의한 문구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동의하시고 예결위에 와서 이게 안 된다고 하시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발언하고 이런 의견 내시고 한 게 너무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 그때 저희가 의견 낼 때는 분기를 월별 정도로 하려고 했던 건데 문구가 한은에서 보기에 너무 건건이 맞춰 나가는 것처럼 비치니 원래 취지대로 월별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좀 릉을 열어 달라 이런 표현이었고요. 문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보지 않은 거는 저희도 좀 잘 못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이……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빌린 다음에 원금은 먼저 갚았는데 이자는 분기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 실제로 원금 내고 난 다음에 이자가 초과해서 12억이 더 집행이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이자는 나중에 갚은 거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나중에 갚으니까 12.8억 원의 부적절한 이익을 한국은행이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자를 계산은 다 해 줘요. 계산은 다 해 주는데 한국은행이 정부에서 이자를 받아 갈 때 오늘 받아 갈 수도 있고

내일 받아 갈 수도 있는데 분기 말에 한 번씩 받아 가니 그동안에 한국은행은 그 돈을 받아 가서 이자를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분기마다 모아 가지고 주니 기회이익이 줄었다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원금대로 주고 이자는 분기별로 받아 가는데 더 일찍 받아 가면서 이거를 그쪽에서……

○조정훈 위원 굴릴 수가 있었는데……

○임미애 위원 굴리면 기회비용이 더 발생할 텐데 이 지적인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런 얘기입니다.

○노종면 위원 이익을 안 준 쪽에서 누렸다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오히려 기재부 쪽에 유리했던……

○김대식 위원 기재부가 유리했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정산 주기를 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건이 맞추는 건 너무 벅차니 한 월별 정산 정도로 가 보자라는 걸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월별 정산으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당길 용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오히려 주기를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우리가 일하기 더 힘들다 그런 입장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정훈 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되니까 12억을 따로 달라고 하세요, 그냥.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잘 맞춰 가지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협의를 좀 해야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문구가 ‘한국은행하고 협의하여 이자 상환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거고……

○소위원장 박형수 예, 문구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거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해태하는 거네요.

○소위원장 박형수 끝났는데 자꾸 얘기할 거예요?

○노종면 위원 한국은행이 해태한 것 같아서 이거 지적해야겠습니다, 제때 받아 가도록.

○소위원장 박형수 자,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일시차입금이자상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와 적절한 경정 절차 마련이라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취지는 다 저희가 따를 계획이고요. 문구에서 보면 ‘예산을 실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 했는데 사실 이게 절

차 없이 바로 조정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더 세게 ‘조정할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조정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실수요에 맞게 조정할 것’.

○조정훈 위원 아니, 이것도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한 것처럼 상임위도 있고 허성무 위원도 있는데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위 문구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성무 위원의 요구사항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상임위에서 논의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되지 않았습니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허성무 위원 안건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 안건은 뭐였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상임위에서 이게……

○조정훈 위원 아니, 여기 상임위도 되어 있고 허성무 위원도 되어 있잖아요.

○김대식 위원 이게 상임위안 것 아니예요? 문구 자체가 상임위안이예요? 허성무안? 상임위안? 상임위안이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허성무 위원은 뭐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전문위원 정대영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정훈 위원 똑같은 내용을 낸 거예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도, 자구도 똑같아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런 게 좀……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정해 달라고요?

○김대식 위원 ‘조정할 것’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절차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조정할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거 문제가 있네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아까 이소영 위원님 얘기한 대로 상임위에서 왜 문구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지 않고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상임위에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계속 돼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다 상임위, 허성무, 상임위, 허성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아요. 내용은 뭐 비교할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서. 19번은 또 상임위, 천하람인데 시정요구사항은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상당히 헛갈리는데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문위원, 이것 어떻게 보세요?

○전문위원 정대영 저희가 혹시 저희 측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조정훈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확인하고, 다음 밑엿것부터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어쨌든 그러면 일단 1차관 기억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한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는 현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할 때까지 보류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기억 이런 것 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시고……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일단 결정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이것 논의하는 것을 잠깐 보류한다는 겁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7쪽입니다.

107쪽, 연번 20번입니다. 윈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충실한 사무실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변상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변상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무역협회에 간 이후에 그쪽에서 갑자기 이전계획을 말씀하면서 전시장을 확대하고 공간을 써야 되니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서울지방 조달청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적된 것 중에 변상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서 가지고 ‘기재부는 향후 사무실 조성 시 이중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할 것’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조정훈 위원 상임위 존중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요. 열심히 설거지하다 보면 그릇도 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변상을 하려면 누구한테 변상할 거예요? 이것은 좀…… 저는 기재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 안 그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상임위 존중합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그래서……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저는 김대식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6쪽입니다.

126페이지, 연번 38번입니다. 기타이자상환 비목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

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타이자상환 사업에 편성된 것을 저희가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된 대로 기금운영비로 넣는 것은 현재 기금운영비상 이 총액이 너무 급증하는 면도 있고 과거와 비교도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어떤 곳에 넣을지를 정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드린다면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현재 있는 기타이자상환 외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것’이라고 정해 주시면 사업 목적에 맞게 추후 예산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할까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상임위라고도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입니까?

상임위하고 최기상 위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되게 헛갈리네요. 왜……

○노종면 위원 유독 기재부만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조정훈 위원 그 앞페이지 보면 계속 상임위, 허성무 위원님 되어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은 누가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하나의 문구밖에 없고……

○노종면 위원 뒤에도 계속 그래요.

○전문위원 정대영 위원님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 소위 자료를 보시면 상임위가 의결했는데 또 위원분들이 예결위에서 서면질의하시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서 문구를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질의할 때?

○전문위원 정대영 똑같이 냅니다, 대부분.

○노종면 위원 대부분 똑같이 내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아까부터 그냥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원님 이렇게 구분 표기되지 않고 병행돼서 들어가 있는 문구가 다 상임위 문구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확인했는데요. 104페이지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인데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김대식 위원 104페이지?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논의 보류하신 104페이지를 보시면……

○이소영 위원 아니, 그러면……

○소위원장 박형수 차관님이 기억을 잘못된 거네.

○이소영 위원 아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상임위가 그 소관 부처 차관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문구 조정을 하고 전체회의 의결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처 차관

님께서 이견을 제시하시는 게 지금 여러 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소관 상임위보다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상임위원분들과 차관님이 합의해서 만든 문구를 여기에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한 요청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형수 자, 일단 정리합시다.

그게 부당하고 어떻게 보면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정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어떻게 문구를 정리하자는……

○이소영 위원 104페이지……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126페이지부터. 이것 하고 다시 104페이지로 돌아갈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기보다 현재 있는 기타이자상환 외 별도 사업…… 아직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니 특정하지 않고 이것 말고 현재 있는 기타이자상환은 안 되니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출할 것’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여기는 안 되겠다. 그것은 저희가……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김대식 위원 동의는 하는데, 지금 이소영 간사님 말씀한 대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문구가 진짜 정리돼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인공이 본인이거든요. 부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구 수정을, 다른 것은 뭐 어느 정도 자구 수정할 수가 있는데 차관님이 상임위에 들어가서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온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존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수정도…… 지금 126페이지도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편성해서 지출할 것인가의 방법론인데 아주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고 총론, 총괄적인 부분이나 이런 자구 수정이 돼야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책임지고 동의를 합니까?

○이소영 위원 제안을 제가……

○김대식 위원 예, 제안 한번 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103페이지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연번 기준으로 15번, 16번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38번 이것 다 보류하고 상임위의 정확한 취지를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최소한 기재위 양당 간사로부터 합의를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다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추가로 얘기한 것은 몰라도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여기 와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꿈수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 상임위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며칠 있으니까 양당 간사로부터 합의를 받아 오시면 그쪽 의결 안 하고 여기서 의결해도 되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형수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임미애 위원 그런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더욱더 부담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노종면 위원 많아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기재부 심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니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인지……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1차관님,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게 얼마만큼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기재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정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일단……

○임미애 위원 가셔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결해야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1차관한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거나 해야 될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김대식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몇 건이나 있어요?

○소위원장 박형수 전문위원은 모르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한 4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104페이지 포함해서?

○김대식 위원 그러면 15, 16, 38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몇 개 안 되면 하나씩 그렇게 보시고 보류가 필요하면 보류하시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아,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1차관님,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71번……

○전문위원 정대영 71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71번?

○전문위원 정대영 예, 연번 71번.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시면요, 예결소위도 빨리 진행하셔야 되니까요. 4건 정도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저희 기재부가 의견 개진을 충분히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4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

단해 보시고 ‘아, 이것은 굳이 상임위원회 다시 가더라도 똑같은 의견이겠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여기서 그냥 결정해 주시고요.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도 ‘어, 이것 좀 아리까리한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상임위에 다시 한번 갔다 와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 그것을……

○조정훈 위원 지금 그 과정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따가 설명을 하시고, 이 문구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 설명하시고 지금 2차관 얘기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박형수 보류해 놓은 상태에서 2차관님이 각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양당 간사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보류된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가라는 게 가서 재의결해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압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리고 이것은 가외 얘기이긴 합니다만 법사위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요. 법사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걱정하게 합니다.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실체관계까지 건드리는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걱정하게 운영을 하니까 예결위도 각 상임위에서 예결에 관련된 것은 법사위 같은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우리가 아예 손 못 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더라도 그렇더라도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15번은 이미 지나갔고 또 저는 설득력이……

○소위원장 박형수 15번은 뭐예요?

○이소영 위원 102페이지에……

○소위원장 박형수 아니아니, 잠깐만, 가만 있어요.

일단 38번부터, 그러니까 126페이지 이것부터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126페이지 이것부터, 어떻게 수정해 달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는 원래 기금운영 사업에 넣어라라는 건데 거기보다 다른 곳을 좀 찾고 싶어서 현재 있는 ‘기타이자상환 외 별도 사업’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김대식 위원 별도 사업.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별도 사업.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기재위에다가 이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산운용하는 데 위탁수수

료를 주는 돈인데 암만 봐도 이게 이자상환에 들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분리하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것을 기금운영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나, 아니면 이것을 아예 뚜렷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 이런 사업을 아예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게 맞나,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정훈 위원 기금운영비가 너무 커져 보일까 봐 걱정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기금운영비를, 전제로 모든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영비 얼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칫 오해 살 수도 있으니, 이것 취지라는 게 자산운용 위탁수수료가 도대체 얼마큼 나가는지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보여 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금사업비에 넣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둘 중의 지금 하나를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그냥 ‘기타이자상환 외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둘 중의 하나 어떤 게 더 맞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정훈 위원 저는 차관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자산운용 외국 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기금운용에 발생하는 비용이 맞지요. 이 기금운영비를 너무 크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위탁수수료를 따로 뺀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정책을 비교하고 이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때 모르는 사람은 기금운영비 하나만 놓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위탁수수료가 기금운영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빼고 싶으면 저는 기재위의 동의를 받아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은 보류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그렇시다. 이것은 보류를 하고 그런 취지로 기재부에서 기재위 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간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시 아까 104페이지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104페이지 문구는 아까 ‘예산을 실수요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였어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소영 위원 저는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이걸 동의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노종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노종면 위원** 15번은 아까 통과됐던 건가요, 103페이지?

○**조정훈 위원** 문구 조정을 했지요, 우리가.

○**노종면 위원** 한은하고 협의해서 시기 조정하는 걸로?

○**김대식 위원** 예.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58페이지의 연번 69번입니다. 정책연수원 신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편성 내역에 부합되지 않은 자산취득 시정 및 위탁기관 자체계정에
서 지출한 비용의 환급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
습니다. 참고로 상임위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61쪽, 연번 71번 기후대응기금 세입총괄입니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확대 및 기금 수입구조 개선 필요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금의 수입 다변화 로드맵 마련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주어가 환경부인데 이 기금은 기재부 기금입니
다. 그래서 주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렇게 추가하면 좀 더
적절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절차를 마련
할 것이라는 이것도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은, 수백 건 중에 빨리빨리 수용하자라고 해서
다 일괄 수용했다가 여기서 보니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자구 수정
취지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자, 이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74쪽입니다.

연번 80번입니다.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타 회계·기금으
로 이관 및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기후특위를 포함해서 제도개선인데 시정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사업은 이미 25년에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편성이, 내

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내용을 할 거고요. 시정을 하기보다 그냥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 기재위에서 의결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게 기재위가 의결했는데……

○조정훈 위원 그런데 시정요구를 낮춰 달라고요, 같은 상임위에서 오신 분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재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되어 왔다고 이해합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상임위가 기재위잖아요.

○김대식 위원 상임위가 시정 아니에요?

○노종면 위원 상임위만 시정인데요, 다른 건 없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자료에 보니까 상임위 시정으로 돼 있는데요.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지금 26년 예산에 시정이 돼 버렸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후특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저희한테 보내 줬고요.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의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미 내년에 사업이 아예 없는데 제도개선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그전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래서 이미 시정이 됐으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시정됐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시정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똑바로 얘기해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왜냐하면 이걸 허용하면 다른 부처에서 다 올 겁니다. 와 가지고 내려 달라, 내려 달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정이라고 하는 게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요구인데 이게 석유코크스 같은 화석연료 사업을 기후위기대응기금에 둔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잘못했다는 취지가 좀 포함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단순히 제도개선의 문제는 아닌 거지요.

○조정훈 위원 예.

○소위원장 박형수 시정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시정으로 그대로 하고.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시정.

○소위원장 박형수 다음, 다른 것.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국세수입에 대해서 세수 재추계 시점 조정 및 재추계 정례화 검토 필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의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재추계 시점을 현재 9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할 계획으로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는 저희가 9월에 할 건데요, 9월

보다 더 당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세 중간예납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8월 말에 들어 오기 때문에 그거보다 당겨지면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재추계 시점 조정'만 빼 주시면 저희는 수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연번 3번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내역의 국회 제출 필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첨부서류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세부내역 공개 시의 전력운용 우선순위나 부대의 위치, 규모,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등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2호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방사청의 경우는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는 추가적인 법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외교·통일은 하는데 왜 국방은 안 하냐라는 지적인데요. 건물공사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부는 사실 보안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외교관, 대사관에 대한 증축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사항이고요. 외교·통일 쪽에서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수용이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게 보안이 필요한 부분까지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보안이 필요 없는 것은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사실 기본 원칙인데 방사청의 사업은, 무기획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제 어떤 물량의 무기를 언제 도입해 가지고 전력화를 언제 하네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보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국방부 관련되는 것도 수통 사고 러닝셔츠 사고 이런 것은 보안사항 아닙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부대하고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군의 KF-21 격납고를 짓는 시설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에 완공한다 하면 KF-21 전투기가 언제 배치가 되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시설사업들은 다 부대 배치하고 관련된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시정 조치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것은 좀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러닝셔츠 사고, 수통 사고 그런 걸 공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공개하는 거고요, 지금도.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된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정훈 위원 아니, 이 문구가 시정요구사항이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와 방사청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추가로 공개돼야 될 내용이 생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달리 말하면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모두 군 보안이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어떻습니까? 수용 가능……

○임미애 위원 부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은 삭제하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삭제인데……

○조정훈 위원 이것은 보류, 검토하시든지요, 더 시간 필요하시면.

○임미애 위원 이것 보류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보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0쪽입니다.

아까 환경부 보조사업 관련해서 기재부 이 페이지에서 논의하자고 말씀하셔서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미반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부처는 의견 있어요?

○전문위원 정대영 당초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 수용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용한 거고.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고.

○노종면 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가 좀 달라요.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자체 교부 보조금 미반납액이 2023년도에 아까 환경부 자료에는 990억이었는데 735억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문위원 정대영 이게 연말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월, 6월…… 보고서 쓸 때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도 정부 자료가 통일이 안 돼서 시점별로, 부처별로 달리 통계가 잡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23년도 통계인데?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23년이라는 게 발생이 언제 한 거예요? 23년 발생분이에요, 아

니면 23년 현재 회수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대영 23년도 예산이 불용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23년에 발생한 거?

○전문위원 정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회수 기한은 아직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2년이라면서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연도의 금액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1년 숫자보다 22년 숫자가 많고 22년 숫자보다 23년 숫자가 많은 걸로 봐서는 뭔가 이게 누적적으로……

○조정훈 위원 미수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미수 누계가……

○노종면 위원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아까 누적 금액은 더 커요, 이것보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 그런가요?

○노종면 위원 연도별로 합산해야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2023년도가 990이고 여기는 지금 735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노종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공무원들이 만든 건가요, 지적을? 환경부가 틀린 숫자를 여기저기 낸 건가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착오 있든지 기재부에서 착오 있든지, 둘 중 하나지.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지적을 한 주체가 환경부나 기재부는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위원 정대영 서면질의입니다.

○김대식 위원 서면질의예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김대식 위원 누구, 천하람 의원실에서 한 건가? 환경 위원인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서면질의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한 거지요.

○김대식 위원 해서 작성한 거다 이거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랬겠지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것 팩트 체크 안 하고 이게 여기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지.

○조정훈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조정훈 위원 지금 우리의 상황은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기재부가 각 부처에 주고 그 중앙부처는 각 지자체에 나눠 줍니다. 사업이 끝나고 미

납금을 환수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은 게 여러 지자체와 몇 년 동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또 통합관리지침에 의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실질적으로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주관 중앙부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중앙부처로 하면 환경부·노동부 같은 중앙부처입니까, 기재부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보조금 관리 주체는 중앙기관입니다. 기재부는 보조금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정대영 보조금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재부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아까 이소영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금 미반납 중앙부처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반납을 파악하다 보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면 감사요구의 대상이 그냥 정부 전체입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라면.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위원장님, 제가 좀……

○조정훈 위원 감사원에서 나오셨으니까.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전기차 보조금 같은 특정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 같은 것은 가능한데요. 정부의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은 저희가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실 때 꼭 필요하다,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어떤 제도개선의 시사점들이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실 때는 어떤……

○조정훈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러면 현재 지자체가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한 금액 총액이 얼마나 이걸 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김대식 위원 기재부가 알고 있지 않아요?

○조정훈 위원 알고 있습니까, 기재부?

○김대식 위원 1조 4000억.

○조정훈 위원 확실합니까? 그것도 자신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도 그 숫자를 받은 거니 반납 안 하고 숨기고 있다거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100% 지금 밝혀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가 답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은 역량이 안 된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아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감당이……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보조금을 운용하는 부처가 몇 개나 됩니까? 전 부처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전 부처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모든 부처가 다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관리를 못 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아까 이소영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재부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모르겠는데 기재부는 전체 지금 보조금 상황에 대해서 각 부처한테 파악을 좀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취합을 전체로 하고. 그래서 아까 환경부 사업처럼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추려서 좀 더 따져 보고 감사원 요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까 무공해차 사업은 사업 단위별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계를 하든지 감사원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따로 처리를 하고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전 부처를 상대로 해서 파악을 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대책도 좀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1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기재부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총괄청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대로,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미반납액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거는 이 문구대로 그대로 하고요.

저희가 부처를 통해서 받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정확한 숫자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제도개선 방안을 짚고 있는지를 100%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만약에 감사원에서 모든 지자체 예산, 모든 사업을 감사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 한두 개 정도를 짚어서 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전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트랙으로 한번 일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180페이지에 있는 의견은 의견대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한 번 더 감사원에서 고민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건 지금 지자체에서 미반납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소영 위원 1조 140억.

○김대식 위원 1조 140억이니까 1조 140억을 누군가가 지금 크로스 체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지요.

○조정훈 위원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1조 140억에 정확성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니까요,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요. 이게 정합성 있는 대책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이게 저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선하겠다고 만드는 방안이 헛다리 짚을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두 트랙으로 진행해 보는 게……

○**김성희 위원** 이렇게 여쭙보고 싶은데요. 감사원도 계시고 기재부도 계시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 3년, 4년 이상 악성적으로 안 돌려보내고 뭉개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한 건 1조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대로 해서 추경 편성이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일이년 정도 늦춰지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 가능한 수준의 문제로 보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다년간에 누적이 돼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마음 먹으면 까짓 것 한 4년 기재부에 돈 주지 말고 버티 보자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구조인 건지가, 저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못 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도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환경부 얘기도 쪽 들어 보니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정 사업 한두 개 정도를 감사원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이게 정말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신이 들 것 같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저희 의견도 하나……

○**소위원장 박형수** 감사원이 전체를 들여다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환경부 그 사업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 갖고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파악하려면 어쨌든 각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부처에서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해서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감사원한테 ‘이것이것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그러면 기재부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 문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감사계획에 그걸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굉장히 무리일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한두 개를 뽑아 가지고 해 보면, 문제가 있으면 전부 확대를 하나씩 해 보는 거지.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려가 되는 건 모든 지자체를 범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니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것을 예결위 때 질의 준비하려고 자료를 쭉 봤었는데요 규모가 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재부는 이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디브레인을 통해서 예산을, 국비를 내려보내고 나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넘어가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지방정부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게 또 지방정부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임미애 위원 예, 지방정부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 제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그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에 따라서 정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이 코드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지방비, 도비 붙는 게 다 달라지면서 이게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고, 만약 그것을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감시당한다라고 느낀다는 것이, 제가 군에 다다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중앙정부가 그렇게까지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러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이게 자료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못 보게라도 하면, 저는 그런 상황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누가 받아 썼는지가 입력이 안 돼요,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김대식 위원 그것은 심각한데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손실 최소화’ 이건 당연히 맞는데 국고보조금의 배분 그다음에 집행 그다음에 반납을 정말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고보조금 관련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또 아까 감사원에서 샘플, 표본을 뽑아서 하시는데 저는 기재부가 최소한 큰 국고보조금 사업들은 소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걸 해야지요. 작은 것, 지자체에서 1000만 원, 100만 원, 몇억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 누적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하지 않은 그것은 검사를 해 봐야지요. 그래서 이 중요성의 원칙을 꼭 지키서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가지고 하신다, 저는 그 발표만 해도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반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잡고 내년 이맘쯤 되면 국고보조금 미반납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관리 체계와 반납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소영 위원 한말씀만……

○소위원장 박형수 정리하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네.

○이소영 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박형수 예.

○이소영 위원 이게 논의의 흐름이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나 환경부 같은 개별 부처의 책임인 것처럼 이 논의가 만약 흘러가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환경부 사업하고 기재부 항목을 쭉 얘기를 들어 보면서 느낀 거는 기재부가 결산을 종합 관리하는 부처이기도 하고 또 보조금과 관련한 법제도를 관리하는 부처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 결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중앙부처가 그게 전기차든 뭐든 다양한 보조금 사업에 기해서 지방에 얼마를 줬는지는 명확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100억을 줬는지 1000억을 줬는지 그거는 당연히 확실한 거고 어떤 특정한 사업의 집행률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당연히 집행률이 얼마였다는 것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100개분을 내려보냈는데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나머지 50개에 해당하는 보조금률이, 국비 부담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얼마를 돌려받을 게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채권 같은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지자체에서는 얼마를 돌려줄 게 있고, 이게 채무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중앙부처에서도 돌려받을 게 얼마다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게 종합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재부가 소관 부처니까 기재부한테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엑셀 파일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 자체가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아까 2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지침에 없다는 거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재부한테도 없고 지침에도 없는데, 법에도 없는데…… 아니, 예를 들면 환경부 같은 부서가 무슨 수로 그거를 받아 낸다는 말이에요? 전화로 계속 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개별 부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 개별 부처를 막 털어 가지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도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 보조금 관리지침의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쌓여 온 이 문제를 아무도 시정하지 않았던 것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게 단순히 어떤 지자체가 돈 안 갚았네, 나쁜 지자체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환경부가 돈 못 받았네, 무능하네, 환경부를 욕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 결산 시스템, 보조금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재부 책임을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기재부도 여기에 대해서 일찍부터 조금 더 정치하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데 대해서 맞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일찍 포착했으면 벌칙 조항을 미리미리 만들고 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집행 안 한 거는 반납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고 반납하도록 법과 규정과 지침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와 주무 부처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정도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지자체와 부처보다는 기재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소위원장 박형수 잠깐만요, 이제 정리합시다.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도 아니고.

기재부 입장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보류를 하고 아까 것과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한 부처의 책임을 빨리 벗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동안 논의한 걸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또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보류를 하고 같이 다 논의를 해서 좀 더 정치한 방안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녹색기후기금 출연 시 어음 우선발행 중지 및 현금출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에 15%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실제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5년이 지났는데 절반밖에 못 냈다라고 할 때 절반 남은 것을 약속어음으로 주는 것을 국제기구가, 여기 녹색기후기금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공약이 완료된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천천히 갚아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지적해서서 어음 우선발행을 중단하라 하시면 이것을 5년 안에 다 갚아야 되는, 다 출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까지 감안할 때 저희가 운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부처 의견 동의합니다, 저는.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분……

○김대식 위원 GCF가 송도에 있는 거지요, 인천 송도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대식 위원 어음, 오랜만에 들어 보는 거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다른 국가들도 다 이렇게 어음 발행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영국, 일본, 독일도 GCF에다가 약속어음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못 낸 부분은.

○임미애 위원 이게 국제기금이잖아요? 동의합니다, 부처 의견에.

○소위원장 박형수 동의한다고 그렇게 세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십니까?

○임미애 위원 이렇게라도 약속 지켜야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3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구체화 및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산정방식 변경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처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앞부분에 있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자라는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국세감면을 산정방식 변경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걸 좀 더 종합적으로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조금 변화시키는 건데요. 방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받아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 정도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5쪽입니다.

연번 9번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경제구조개혁 전략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사업,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유사 사업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도 기재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사업 이름이 중장기 경제전략, 경제구조개혁 전략, 신성장전략,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다음부터 좀 더 구체화해서 작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3개가 자세히 보면 중장기 경제전략은 인구위기나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꾸려 나가는 거고, 경제구조개혁은 연금·의료·노동시장·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신성장전략은 특별하게 성장동력을 만드는 몇 개를 골라서 하는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사실상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상임위에서 삭제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삭제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형수** 이것 천하람 위원이 별개로……

위원님들 의견……

○**김대식 위원** 그러면 부처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수용해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수립주기 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내용도 기재위에서 논의가 됐고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 지적사항이 저희들도 의아한 부분이 현재 매년 5개년 계획을 롤링 플랜으로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사항은 뭐냐 하면 그러지 말고 3년 또는 5년 주기로 제한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매년 하고 있는 것을 횡수를 줄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형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연번 12번 대외경제협력기금 총괄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ODA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1번의 경우에 저희가 절차를 좀 간소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혜국에 지원방침이 통보되면 수혜국에서 수락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방침을 결정해서 협정 체결해서 자금이 나가는데 수혜국 수락이라는 부분을 작년에 시행령 개정에서 절차를 뺐습니다. 뺐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없는 내용이 수혜국에 지원방침을 통보하기 전에 수혜국에서 먼저 차관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이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협의를 거쳐서 하지만 신청을 하고 나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수락을 받고. 그러면 정부가 협정을 체결해서 론(loan)이 체결돼서 자금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수원국에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신청했는데 수락을 또 하라고?’ 하면서 이 절차가, 수락을 하기 위해서 그 정부 내의 절차에 석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절차가 지연되니 규제를 좀 풀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푼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 앞단에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저희가 수용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작년에 바뀌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24년에 이것을 개선해서 수혜국의 불평이 있어서 빼준 겁니다. 그런데 수원국과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이것을 어디를 빼야 돼요?

○임미애 위원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수혜국이 수락 후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이걸 빼자는 얘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원래 신청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작년에 바뀌었다 하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까?

○임미애 위원 예.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감사요구안입니다.

연번 1번의 경우는 2년간 역대 최고 수준 세수결손 발생에 대한 감사고, 연번 2번은 세수결손 대응 시 국고손실 초래 등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의견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그간의 결산소위 관례대로 감사요구사항은 마지막 날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토론을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논의되는 걸 보고 저희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재정관리 운영 실태라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이 비슷한 것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그러면 일단 이것은 두 건 다 보류를 해 놓고 나중에 논의를 하면서, 감사원이 지금 이미 잡아 놓은 감사사항이 있다면서요? 그것까지 비교해 가지고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감사요구안이요 문화체육관광에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2건이 있고 또 있나요?

○소위원장 박형수 아까 환경부 그것도 있고.

○임미애 위원 올라온 것은 없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소영 위원 여기 그런데 상임위…… 아, 상임위 예비심사가 아니구나.

○임미애 위원 우리가 예결위 거쳐서……

그러면 논의하게 되면 전체 4건을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내일도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내일 또…… 이것은 오늘 것.

○임미애 위원 아, 이게 오늘 것만이에요?

○김대식 위원 오늘 것만 그거고 내일 것도 있고 모레 것도 있고 이래서……

○감사원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예, 그래서 항상 마지막 날 검토를 해 왔었거든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해서 마지막 날 모아서 논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부처 의견도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날 부처도 나오나요? 감사원 감사요구에 대해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의한…… 이게 완전 소소위로 보류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소위원장 박형수 그 의미가 아니라요.

○이소영 위원 금요일에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그것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부처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부처는 참석하지 않고 하나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임미애 위원 감사 건과 관련해서는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이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이라도 들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 안 하나요, 원래?

○전문위원 정대영 어차피 기재부가 다 취합해서 옵니다, 부처 의견을.

그래서 기재부 그다음에 소위원님들 그다음에 감사원, 저희 그렇게 해서……

○김대식 위원 그때 기재부는 오시지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옵니다.

○소위원장 박형수 하여튼 이 부분은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마지막 날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의결하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대식 김성희 노종면 박형수 이소영 임미애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문신학

제2차관 이호현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환경부

차관 금한승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손옥주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현욱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강희업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우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국세청

차장 최재봉

기획조정관 김재웅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진희
심사국장 손성수
조달청
차장직무대리 이형식
통계청
차장직무대리 이명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진석
농촌진흥청
차장 서효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산림청
차장 이미라
기획조정관 이종수
특허청
차장 목성호
기획조정관 구영민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원호
기상청
차장 김승희
기획조정관 이정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직무대리 박상옥
시설사업국장 최형욱
새만금개발청
차장 조홍남
기획조정관 정인권
해양경찰청
차장직무대리 여성수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선중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